



2010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Suggestion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Seoul

신경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Suggestion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Seoul

2010

Ⅰ 연구진 Ⅰ

연구책임 신 경 희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정 순 주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
- 2007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2009년 들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서울시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틀을 만들. 그리고 2010년부터 3년간 천여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 3차에 걸쳐 총 252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단기간에 양적 팽창을 하였으나 행정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
 - 단기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행정지원체계의 미비로 이들 사업체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구축이 미흡하며, 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방식에 치중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규모, 사업체 특성과 행정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는 것임.

2. 연구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며,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를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유형을 분석·정리함.
- 둘째,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와 지원사업 현황을 중앙정부, 서울시 및 자치구로 구분하여 분석·정리함.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의 행정 내부자료를 활용하였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현황과 특성을 분석함. 사회적기업 현황과 특성은 고용노동부 행정 내부자료를 활용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사업체 현황은 사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신청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함. 지정사업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넷째,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지원기관 실무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간담회를 시행함.

II.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정책 유형

1.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

○사회적기업 정의의 국가별 차이

- 사회적기업은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정의와 기준은 없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소개되는 정의로는 유럽 사회경제연구 분야의 리서치 네트워크인 EMES의 정의가 있음. EMES는 경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먼저 경제적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달리 지속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판매함. ② 사회적기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며, 지원을 받더라도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운영 자율성을 가짐. ③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과 달리 구성원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조직의 재정 안정성은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음. ④ 사회적기업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함. 또한 사회적 기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산함. ② 사회적기업은 공동의 이해나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사회나 시민활동의 산물이므로 시민 주도의 참여적 특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존해야 함. ③ 사회적기업에서 자본 소유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1인 1투표권 원칙에 의하거나 최소한 자본 소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④ 사회적기업은 서비스 이용자들을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보며, 이용자들은 기업 활동에 참여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침. ⑤ 사회적기업은 이익분배를 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를 하는 만큼,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정의와 요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실체는 아님.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예비사회적기업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지정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1-3항의 조직형태,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2.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 유형

○ 외부환경조성

- 관련법 제정 : 사회적기업 정책의 틀을 만들고 지원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춘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육성정책의 출발점임.
- 정보 인프라 구축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연구 조사와 정보 수집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운영원리를 혁신적으로 통합하는 실험 과정을 거쳐 계속 진화 발전해가는 중임.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기업 발전의 중심축이므로, 이들을 양성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함.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조직적 성과로 보는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김.

-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 :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사업이 육성정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지원기관 육성 : 사회적기업에는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경영컨설팅도 필요하나, 복합적 목적을 추구하는 만큼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 육성이 사회적기업 발전에 필요함.
- 적정한 자금 조달 여건 조성 :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설립과 발전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정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
- 교류 및 협력지원 : 사회적기업 발전에 혁신적 모방도 중요하므로 국가,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학습할 수 있는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이 중요함.

○ 직접지원

- 재정지원 : 프랑스, 벨기에의 경우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사업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영지원 : 영국은 사회적기업 창업단계에서부터 발전단계별, 업종별로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경영지원을 하고 있음. 미국은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경영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연계하는 민간 지원기관의 활동이 활발함.
- 교육·훈련지원 :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근로자 및 관리자의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영국은 사회적기업 관리자와 근로자의 직업훈련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

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공무원을 위한 공공조달계약 지침 개발과 교육 등을 통해 판로지원을 하고 있음.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조세 감면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에서 거의 활용하는 지원방식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Ⅲ.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 및 지원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고용서비스정책관 소관의 사회적기업과가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이 (예비)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팀이 신설된 자치구는 2010년 8월말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와 양천구, 금천구의 3개 자치구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첫째, 직접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및 경영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둘째, 외부환경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 개설, 장학금 지급 등의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를 위해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사회적기업 육성수기 공모사업을 하고 있음.

- 25개 자치구 중에서 2010년 사회적기업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6개 자치구이며 예산 총액은 9억 610만원임. 이 중 인건비 지원이 17.7%, 사업개발비가 47.3%, 홍보 및 교육훈련비가 12.9%임.

IV.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규모 및 특성

- 2010년 8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서울시·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총 40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음.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58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마포구(45개), 영등포구(38개), 강남구(32개) 등의 순으로 특정 자치구에 편재되어 있음.
- 서울의 사회적기업은 전국에 비해 문화·예술·관광·운동과 교육 분야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의 비중이 낮음.
- 조직형태로 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상법상 회사 비중이 각각 42.9%, 43.8%로 가장 큼. 서울은 전국에 비해 민법상 법인 비중이 높고, 비영리민간단체 비중이 낮음.
- 사회적 목적으로 보면 서울도 일자리제공형이 35.6%로 가장 많으나, 전국(48.9%)에 비해 비중이 낮음. 반면 서울은 전국에 비해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기타형의 비중이 높음.
- 서울의 사회적기업 고용규모로 보면 20인 미만이 56.2%로 가장 많으며, 이어 20-50인 미만이 28.8%, 50-100인 미만이 11.0%, 100인 이상이 4.1%의 순임.

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특성

-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서비스 분야의 업종이 많음.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66개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예술 분야(21.8%)와 교육서비스 분야(19.4%)의 업종이 가장 많음.
 - 이어 제조업 12.2%, 외식사업 및 식품제조판매 12.1%, 재활용 환경 6.7%, 택배 및 배달서비스 5.5%, 간병·생활보조서비스 4.2%, 보육서비스, 집수리 및 조경관리 각각 3.6%, 관광분야 1.8%의 순임.
- 사회적 목적은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이 많음.
 -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이 각각 4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법인이 많음.
 - 상법상 회사가 37.0%로 가장 많음. 민법상 사단법인은 26.7%, 민법상 재단법인은 2.4%로 민법상 법인이 29.1%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가 14.5%, 기타 법률의 비영리단체가 9.7%,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이 9.1%임.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는 2012년 이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는 2011년이 65.7%, 2012년이 25.3%, 2010년 후반기가 4.8%로, 사업체의 95.8%가 지정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고려하고 있음.
- 근로자 유형과 규모
 - 사업체당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평균 14.7명임. 중위값은 9.5명으로 사업체의 50%가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사업체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29.0%이며, 사업체당 평균 11.3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일하고 있음.
 - 사업체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14.8%이며, 사업체당 평균 9.9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음.

-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28.9%가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17.5%는 교육서비스 업종에서, 14.2%는 문화·예술·관광 업종에서 일하고 있음. 또한 간병·보육·보건 의료서비스업의 근로자 비중은 10.6%, 외식사업·식품제조업의 근로자 비중은 8.8%, 제조업의 근로자 비중은 14.1%를 차지함. 재활용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5.8%임.
- 시간제 근로자의 53.4%는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
-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70.6%는 취약계층에 속함. 취약계층 근로자 중에서 중고령자 비중이 35.2%로 가장 크며, 이어 장애인이 21.2%, 경력 단절 여성이 12.9%, 저소득층이 11.1%, 장기실업자가 6.1%의 순임.

○ 운영 현황

- 지난 3개월(2010년 7월-9월)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8,085만원이고, 중위값은 2,700만원, 최소값은 36만원, 최대값은 29억 6,570만원임.
- 매출총이익(총매출액-매출원가)은 사업체당 평균 3,051만원이고, 중위값은 1,193만원, 최소값은 -4,308만원, 최대값은 3억 9,745만원임.
- 영업이익(매출총이익-급여·상여금·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은 사업체당 평균 -635만원이며, 중위값은 212만원, 최소값은 -2억 894만원, 최대값은 9,200만원임.
- 매출액의 경우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 분야의 사업체가 평균 2억 7,827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가 평균 8,903만원, 재활용 환경 분야의 사업체가 평균 8,373만원,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사업체가 평균 5,900만원임. 또한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외식사업·식품제조업 분야의 사업체가 각각 평균 4,117만원, 3,559만원, 3,909만원임.
- 영업이익은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분야의 사업체가 평균 870만원, 재활용 환경 분야의 사업체가 평균 20만원이며,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등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사업체는 적자임.

-영업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이 67.6%, 중앙 정부, 서울시, 자치구 지원금이 20.0%로, 영업외수입의 87.6%가 정부보조금임. 이외 모법인 지원금이 3.5%, 기업 지원금 2.1%, 개인 및 기타 후원금이 4.1%임.

○애로사항과 애로수준

-사업체가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 1순위로 ‘운영자금 부족’을 들은 사업체가 34.3%로 가장 많음. 이어 ‘마케팅 및 판로문제’가 22.9%, ‘사무실 및 매장, 공장 등 사업장 확보 문제’가 14.5%, ‘근로자 채용 및 이직 등 인력수급 문제’가 10.2%임.

-애로수준을 보면 ‘마케팅 및 판로문제’가 4.11점(약간 있음 4점), ‘운영자금 부족’이 4.06점으로 애로수준이 가장 높음.

○지원사업 요구와 필요도

-희망 지원사업 1순위로 ‘인건비 지원’을 들은 사업체가 47.9%로 가장 많음. 이어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22.4%)’,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7.3%)’,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6.7%)’ 등의 순임.

-지원사업 중에서 필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4.75점(매우 필요 5점),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이 4.60점으로 매우 필요에 근접함.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은 4.37점,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은 4.21점임. ‘대표자 및 관리자 전문경영지원’은 3.74점,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은 3.89점,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은 3.92점으로 필요(4점)에 근접함.

○외부환경 요인 중요도

-외부환경 요인 중에서 1순위로 중요한 것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들은 사업체가 21.1%임. ‘민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와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을 1순위로 꼽은 사업체는 각각 15.7%임. 또한 1순위로 ‘서울시, 자치구, 고용노동부와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

를 들은 사업체는 13.9%',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 양성'을 들은 사업체는 13.3%임.

- 외부환경요인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서울시·자치구·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와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서비스'로 각각 4.44점(매우 중요 5점)을 기록함. '민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는 4.40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윤리적 소비 확대'는 4.38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는 4.36점,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은 4.25점,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 양성'은 4.21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 민간지원기관의 전문성'은 4.13점으로, 외부환경요인 10개 중에서 8개 요인이 4점 이상(중요)을 받음. '예비사회적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와 '국내·외 예비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및 상호교류 전문웹사이트'는 각각 3.85점과 3.87점을 받았으나, 중요하다(4점)에 근접한 점수임.

V. 정책제안

1.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주

- 고용노동부, 서울시, 자치구 인증 및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포괄
 - 서울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체(예비사회적기업),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공모 사업을 통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정에 국한되어 있음.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대상 사업체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을 포괄함.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공동체사업 포괄
 - 현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기초는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사회 관련 정책 전략은 거의 없음. 또한 지역주민 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사업(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개념과 유사함. 따라서 지역공동체사업을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포괄하는 것이 필요함.
 - 전국의 사회적기업 319개(2010년 7월 기준) 중에서 자활공동체로 시작한 사업체가 18.2%이며, 서울의 경우 이보다 낮은 9.6%임.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실직빈곤층을 위한 고용창출과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에서 출발한 자활공동체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전형적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은 부처 업무에 따라 강조하는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유사성도 많은 사업임.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들 사업들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 범주에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공동체를 포괄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함.

2. 행정지원 및 관리체계

- (예비)사회적기업의 행정 접촉창구 단일화
 -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는 그 속성상 여러 행정부서와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 행정위계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 걸쳐 지원업무가 이루어짐. 그리고 횡적으로는 문화, 환경, 복지, 교육, 고용 등 부서별로 업무 연계가 필요함. 유립연합은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행정 접촉창구를 단일화하

도록 제안하고 있음. 단일화된 접촉창구가 없으면 사회적기업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 의뢰하더라도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외부환경요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고용노동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함.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차 행정 접촉창구는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고, 서울시의 행정 접촉창구는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팀으로 함. 자치구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팀은 사회적기업 지원의 부서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임.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 지원 및 관리의 역할 분담

-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과 해외를 사업활동 영역으로 삼는 사업체도 15.4%에 이룸. 자치구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성을 높여 시간과 교통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함.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비)사회적기업 활동영역을 글로벌형, 전국형, 커뮤니티형으로 분류하여 서울시는 글로벌형과 전국형을, 자치구는 커뮤니티형을 지원관리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을 모색함.

○거점 지원기관 설정과 지원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경영지원, 마케팅, 교육훈련 등의 간접지원이 매우 중요함.
- 서울시는 업종분야, 근로자 유형, 자활공동체형 등으로 유형별 거점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이들 지원기관들이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활동 지원

-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사회적기업연합’이 구성되어 있음. 이 기관들이 단일연합체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예비)사회적기업 간에, 그리고 서울시와 (예비)사회적기업 간에 소통이 원활해져 각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서울시는 두 협의체가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고, 통합협의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제공과 운영비 일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3. 교육·훈련지원사업

○교육·훈련커리큘럼 개발과 교육훈련사업 확대

- 공무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이해도가 낮아 지원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자치구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훈련프로그램 제공’이 업무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산하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의 교육훈련사업 기획과 교육훈련 실시가 필요함.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대상 교육사업

- 사회적기업은 사업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공감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일하는 것에서 출발함.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사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함.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표자 및 전문경영 교육 지원’에 대해 필요수준이 3.74점(필요 4점)으로 나타남.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응답자의 25.5%가 시민사회 부문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에 현재 종사한다고 함. 이는 관리자가 이익 창출에 필요한 전문 경영 분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자원봉사자 연계와 교육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14.5%이며,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7.5%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질 경우 이들의 참여와 지원 폭이 커져(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원봉사처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 자원봉사자와 (예비)사회적기업을 연계하도록 함.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사업을 실시함.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지원방식의 다양화

—서울시는 현재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와 지정사업만을 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 대신 작업장 제공,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전제로 하는 공모방식 등도 병행함.

5. 업종별 지원사업 차별화

—공공의 사업체 지원은 관행적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있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문화예술분야로

36개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 중 제조업체는 20개인데, 생산품 판로 지원방식으로 공공구매가 효율적인지, 공동판매시설 제공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체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제조업 공동판매시설 지원과 문화예술 공동작업장 지원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

-간병, 보육,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평균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큼. 청소, 집수리, 택배 등의 개인서비스 제공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일대일 대면서비스를 하는 사회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업종임. 매출액이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비 지출 비중이 큰 사회서비스 사업체는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여타 사업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서울시 사회적기업 웹사이트 활성화

-서울시가 현재 개발 중인 서울시 사회적기업 웹사이트가 충실하게 구성되어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여러 가지 지원기능을 할 수 있음. 첫째, 서울시 사회적기업 웹사이트를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 정보구축과 통합관리가 가능함. 둘째, 웹사이트가 행정 접촉창구 단일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셋째,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학습하는 거점기능을 할 수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제2장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정책 유형	11
제1절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	11
1. 사회적기업 정의의 국가별 차이	11
2.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정의와 요건	13
3.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기준	16
제2절 육성정책 유형	19
1. 외부환경 조성	19
2. 직접 지원	32
제3장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 및 지원 현황	41
제1절 중앙정부	41
1. 추진체계	41
2. 육성지원사업	43
제2절 서울시	49
1. 제도 및 행정체계	49
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지원사업	50
제3절 자치구	52
1. 제도 및 행정체계	52
2. 예산 및 종합계획	56
3. 지원사업	59
4.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단에 대한 의견	62

제4장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69
제1절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69
1. 사회적기업 신청 및 인증 현황	69
2. 사회적기업의 특성	70
제2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현황	73
1. 신청·지정 사업체 규모	73
2. 사업체 일반 현황	74
3. 신청 및 지정사업체 특성	77
4. 희망 지원사항	83
5.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별 현황	84
제3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결과	87
1. 사업체 일반현황	87
2. 사회적기업 인증과 목표	93
3. 근로자 현황	96
4. 운영현황	103
5. 애로사항과 희망 지원사항	112
6. 응답자 사항	118
제5장 정책제안	123
참고문헌	139
부 록	143
영문요약	165

표 목 차

〈표 2-1〉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현황과 조례내용	18
〈표 3-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44
〈표 3-2〉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	46
〈표 3-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사업 현황	48
〈표 3-4〉 민선5기 구청장의 사회적기업 육성 선거공약 여부	52
〈표 3-5〉 자치구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와 부서명	53
〈표 3-6〉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현황	55
〈표 3-7〉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현황	56
〈표 3-8〉 자치구 사회적기업 예산 현황	58
〈표 3-9〉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 현황	58
〈표 3-10〉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현황	60
〈표 3-11〉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사례 현황	62
〈표 3-12〉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63
〈표 3-13〉 자치구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단별 필요도	65
〈표 4-1〉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69
〈표 4-2〉 사회적기업의 신청 및 인증 현황	70
〈표 4-3〉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	70
〈표 4-4〉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	71
〈표 4-5〉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현황	71
〈표 4-6〉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의 사업형태	72
〈표 4-7〉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73
〈표 4-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수와 지정을	73
〈표 4-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분야별 현황	74
〈표 4-1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설립연도	75

〈표 4-11〉 자치구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수	75
〈표 4-1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사업지역	77
〈표 4-1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조직형태	77
〈표 4-1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사회적 목적 유형	78
〈표 4-15〉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연간 예산액	79
〈표 4-16〉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연간 지원희망예산	80
〈표 4-17〉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현 고용인원	81
〈표 4-1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	82
〈표 4-1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인건비 신청	83
〈표 4-2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경영컨설팅 희망분야	84
〈표 4-21〉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별 분포	85
〈표 4-2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기별 설문조사 응답률	87
〈표 4-2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모법인 조직형태	88
〈표 4-2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법인 설립연도	89
〈표 4-25〉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준비연도	90
〈표 4-26〉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90
〈표 4-27〉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91
〈표 4-2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별 현황	92
〈표 4-2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업종별 조직형태	92
〈표 4-30〉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	93
〈표 4-31〉 사회적기업 인증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94
〈표 4-32〉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인증 시 장애요인 1순위	95
〈표 4-33〉 예비사회적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96
〈표 4-3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유형별 비중	97
〈표 4-35〉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규모	97

〈표 4-36〉 4대보험 미가입 시간제 근로자 현황	97
〈표 4-37〉 자원봉사자 현황	98
〈표 4-3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별 근로자 비중	98
〈표 4-39〉 업종별 인건비 지원 평균 근로자 수	100
〈표 4-40〉 취약계층 유형별 근로자 비중	101
〈표 4-41〉 업종별 취약계층 고용인원	102
〈표 4-42〉 인건비 지원 중단 이후 근로자 고용규모 전망	103
〈표 4-43〉 출자 주체별 출자금 규모	104
〈표 4-44〉 조직형태별 출자주체의 출자금 비중	105
〈표 4-45〉 업종별 출자금 규모 및 출자주체별 비중	106
〈표 4-46〉 영업수입	108
〈표 4-47〉 업종별 영업수입	108
〈표 4-48〉 영업외수입 구조와 항목별 수입규모	109
〈표 4-49〉 업종별 영업외수입 항목별 비중	110
〈표 4-50〉 지출 구조와 항목별 지출비중	111
〈표 4-51〉 업종별 총지출 규모와 항목별 지출비중	112
〈표 4-52〉 애로사항별 순위 및 애로수준	113
〈표 4-53〉 서울시 지원사업별 수혜 사업체수와 만족도	114
〈표 4-54〉 직접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필요도	116
〈표 4-55〉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조성사업 중요도	117
〈표 4-56〉 응답자 인구특성	118
〈표 4-57〉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 동기	119
〈표 4-58〉 서울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 전망	119
〈표 4-5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전망	120
〈표 4-60〉 성별·연령별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참여 유무	120

그림 목차

〈그림 3-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 지침	42
〈그림 3-2〉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및 지정 절차	50
〈그림 3-3〉 2011년 이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및 지정 관리체계	50
〈그림 4-1〉 자치구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체수	76
〈그림 5-1〉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지원 체계	127

제1장 연구개요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주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육성정책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2009년 들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틀을 만들었다.
 -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00여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09년 11월 제1차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공고를 하였다. 이어 2010년 제2차 공모(2월)와 제3차 공모 사업(6월)을 통해 총 252개 사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치구의 경우 용산구가 2009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처음 제정하였고, 이어 마포구(2009년 10월), 중랑구(2009년 12월)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였다. 2010년 12월말까지는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전략 필요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에는 2010년 들어 단기간에 서울시와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2007년 이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10월말 현재 서울에는 8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2010년 1년간 4차에 걸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정을 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지정 사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사업체수가 3개월마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팀이 2010년 9월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에서 서울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총량과 사업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축적 행정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행정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방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초기의 인건비 지원단계에서 더 나아가 경영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인건비 지원 이외의 경영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서울의 (예비)사회적기업의 규모와 사업체 특성, 행정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서울시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전략과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를 살펴 보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유형을 분석·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행정체계와 지원현황을 중앙정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구분하여 분석·정리하였다. 문헌연구와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행정내부자료도 활용하였다. 또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설문조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수, 행정지원체계, 예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6급)과 7~9급 실무자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치구별 업무담당자에게 전송하였고, 응답설문지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회수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15일로 예정하였으나, 조사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관련 담당조직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자치구가 많아 10월 21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제4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사업체,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체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를 활용하였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현황은 1, 2, 3차 공모에 신청한 724개 사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엑셀과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신청서에는 사업 분야, 사업체 설립연도, 사업체 소재지, 경영컨설팅 희망분야, 조직형태, 사회

적 목적 유형, 사업지역, 연간예산액 및 지원희망예산, 취약계층 근로자 수, 서비스 수혜자 수 등의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설문조사

-1, 2, 3차 공모를 통해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사업체의 업종, 조직형태, 모법인 형태, 설립연도, 사회적 목적 유형, 사회적기업 인증시기와 장애요인, 경영 및 근로자 현황, 애로사항과 희망 지원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방법은 연구진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252개 지정사업체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사업체 실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설문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체 주소를 확인하였다. 이 작업을 거쳐 소재지가 분명하게 파악된 23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송하였고, 설문지 회수도 우편과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6일부터 17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후 보충조사가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보낸 사업체 중에서 응답설문지를 보낸 사업체는 166개로, 응답률은 70.6%이다.

-제5장에서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진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와 간담회를 하였다.

○심층면접조사

-(예비)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하자센터와 사단법인 Seed:s,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실무자, 사회적기업인 ‘더 좋은 세상’(용산구 소재)의 대표자, 종로구와 마포구 사회적기업 업무담당공무원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10년 7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 간담회

- 제1차 간담회(9월 24일)에는 전문가 2인,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자 2인이 참석하였다. 제2차 간담회(11월 23일)에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6인과 서울시 사회적기업팀 실무자가 참가하였다. 제3차 간담회(11월 25일)에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표자 5인과 서울시 사회적기업팀장이 참석하였다.

제2장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정책 유형

- 제1절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
- 제2절 육성정책 유형

제 2 장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정책 유형

제1절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정의

1. 사회적기업 정의의 국가별 차이

- 사회적기업은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고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하며, 그 의미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 정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틀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정의는 결국 다양한 정책 모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소개되는 정의로는 유럽 사회경제 연구 분야의 리서치 네트워크인 EMES의 정의가 있다.
- EMES는 유럽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적 기준 4가지와 사회적 기준 5가지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다음 9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

준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종의 이상형(ideal type)이라 할 수 있다 (Defourny, 2007).

-경제적 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달리 지속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판매한다. ② 사회적기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며, 지원을 받더라도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운영 자율성을 가진다. ③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과 달리 구성원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조직의 재정 안정성은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 ④ 사회적기업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준 5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집단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산한다. ② 사회적기업은 공동의 이해나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사회나 시민활동의 산물이므로 시민 주도의 참여적 특성을 어떤 형식으로도 보존해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에서 자본 소유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1인 1투표권 원칙에 의하거나 최소한 자본소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사회적기업은 서비스 이용자들을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보며, 이용자들은 기업 활동에 참여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⑤ 사회적기업은 이익분배를 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를 하는 만큼,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유럽위원회가 내린 사회적기업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은 ① 사회적 목표를 민간부문의 기업적 정신과 결합하고, ② 잉여수익을 사회적 목표 혹은 지역사회 목표를 달성하는데 재투자하며, ③ 민간기업, 협동조합, 협회, 자발적 조직, 자선단체, 상호조직 등의 형태로 등록되어 있고, 일부 법인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역, 2010).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사업목표가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
에 있는 기업체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직이나 공동
체에 원칙적으로 재투자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체로 정의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06).
- 이탈리아는 2006년 「사회적기업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법적 정의를 하였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적 방식으로 공익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하는 민간 조직으로
소유주나 회원에게 이윤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 유럽에 비해 미국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조직적 산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노동부·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이런 점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을 비롯한 대학들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
는 아쇼카 재단 등은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양성을 강조하는 교육프로
그램이나 사업에 역점을 둔다.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개
인이나 조직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주목하며, 사회적 목적을 달
성하는 수단, 형태보다는 사회적 목적과 영향력을 중시한다(조영복·곽
선화·류정란, 2010).

2.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정의와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
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

- 첫째, 사회적기업은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 둘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 셋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¹⁾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

1)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①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④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 ⑧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⑪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가)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²⁾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여섯째, 다음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 정관 등).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응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

⑫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할 사람

2) 사회서비스의 종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① 보육서비스 ②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③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⑥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⑦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회적기업의 지부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

3.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기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실체이거나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제3섹터 조직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르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정책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조례에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례상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정의와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1)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시는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제1조 목적)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

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다(제5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크게 3가지이다. 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이 그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둘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셋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이 그것이다.

2)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9개이다.
-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들과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의 목적은 같으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정요건도 거의 동일하다. 다만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는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것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

〈표 2-1〉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현황과 조례내용

자치구	조례명	내용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해당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3) 종로구, 마포구의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는 관내 주된 사무소 조항이 없음.

제2절 육성정책 유형

—유럽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의 지원사업,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된 지원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며, 둘째는 사회적기업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1. 외부환경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정책으로는 사회적기업 관련법 제정, 사회적기업 정보 인프라 구축,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육성,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 사회적기업 간 국내·외 교류 및 협력지원을 들 수 있다.

1) 관련법 제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규정하고 지원근거가 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은 규제적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기업 정책의 틀을 만들고 지원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춘다는 점에서 육성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실체는 존재하지만 표준화된 정의를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비해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는 있으나, 법적

차원에서 엄격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법체계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육성정책도 여러 법체계하에서 작동된다고 할 것이다. 영국은 법적 차원으로 규정된 사회적기업이 없는 만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별도의 법적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지역공동체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을 법제화하였다. 사회적기업을 위해 지역공동체기업(CIC)이란 법적 형태를 특별히 고안한 것이다(노동부·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 이탈리아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제3섹터의 경제활동을 표준적인 기준하에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사회적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1991년 이탈리아는 제3섹터 조직 중에서 가장 기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기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치구도 2009년 용산구를 시작으로 2010년 8월말 현재 9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차원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차원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 정보 인프라 구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사회적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유, 발신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와 정보의 축적은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 수립과 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 조사와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 사회적기업 부문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회원국 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199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개발 지원, 관련 정보와 통계자료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역, 2010).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 수집 및 통계 인프라 개발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왔다. 영국 정부는 2002년 이후 전국 사업체 조사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 자료 구축 및 사회적기업 성과와 효과 측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www.businesslink.gov.uk/socialenterprise4), www.socialenterprise.org.uk5), www.sel.org.uk6) 구축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미국 스콜재단7)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학술연구와 정보 구축을 위해 2003년 Oxford 대학 Said Business School에 ‘Skoll Center for

4)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함.

5) 영국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

6) 런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

7) eBay 초대대표였던 Jeff Skoll은 적합한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1999년에 Skoll Foundation을 설립함. 스콜재단은 전 세계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음(최종태 외, 2007).

Social Entrepreneurship'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비전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Social Edge(www.socialedge.org)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가, 비영리조직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종태 외, 2007).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 법 제6조(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6월 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조항(제20조)을 두었는데,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진흥원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육성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시나 자치구의 조례에서도 시장이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모범모델의 발굴과 확산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 발신을 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회적기업은 지구적 또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을 근간으로 혁신적인 기업가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일반 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운영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하에 실험적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사회적기업가가 사회적기업 발전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조직적 성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의 주된 사업이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미국의 아쇼카재단⁸⁾은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사회적기업가가 되도록 자극하는 프로그램과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다⁹⁾. 미국 내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교두보이자 지렛대 역할을 하는 GSVC(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도 매년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지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킨재단(Skoll Foundation)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양성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미국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중등교육 일반졸업시험, 대학입학자격시험에 사회적기업 내용을 포함시키며, 대학과 직업교육과정단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상담 시에도 학생들이 사회적기업가를 장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술부는 학생들이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재용 사회적기업 교육지침서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기도 한다(Cabinet Office, 2006). 그리고 내각부와 민간재단, 런던개발청 등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¹⁰⁾’가 있다. 이외 사회적기

8) 빌 드레이튼이 1980년에 설립한 아쇼카재단(Ashoka Foundation)은 2006년까지 68개 국가에서 1,820명의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6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음(박연진 외 역, 2008).

9) 듀크대학의 사회적기업가 발전연구센터(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Entrepreneurs), 스탠포드대학 사회혁신센터(Center for Social Innovation),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 등의 대학교육기관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조영복·곽성화·류정란 역, 2010). 뉴욕대학의 로버트 와그너 공공서비스대학원은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전공과 관련 없이 뉴욕대 전체에서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박연진 외 역, 2008).

10) 1997년 Michael Young이 The London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를 설립함. 이후 21세기

업 관련 우수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사회적기업 학교상(the Social Enterprise in Schools Award)’도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¹⁾.

-스쿨재단이 사회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주도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시상하는 Skoll Awards for Social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도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도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사회적기업 경영인력 양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의 경우 용산구, 중랑구,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가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 시 사회적기업 경영인력 양성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다.

4)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경제활동이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활동 그 자체에도 우호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가 커질수록 사회적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하는, 즉 윤리적 소비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Millennium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이 프로그램이 전국의 10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로 발전하게 되고, 현재 이 학교는 중앙정부와 런던시, 여러 민간재단으로부터 기금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자료 : www.sse.org.uk).

11) 자료 : www.socialenterpriseawards.org.uk/pages/social-enterprise-in-schools.html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사업을 통해 대중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저변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자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사회적기업가를 지향하도록, 그리고 소비자들과 자본가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명의 사회적기업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한편, 청년층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장려하는 캠페인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대중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의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이외 조사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 사업을 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06).
- 스콜재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시민들의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화제작자, 다큐멘터리 제작자, 기타 언론인들이 사회적기업 관련 작품을 만들도록 250만달러의 기금(PBS Foundation Social Entrepreneurship Fund)을 조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세계적 리더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인 Skoll World Forum on Social Entrepreneurship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최종태 외, 2007).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6조2)에서는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주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는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첫째,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둘째,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셋째,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치구 조례에서도 서울시 조례에서와 같이 지역주민 이해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위의 세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지원기관 육성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기업과 비슷한 유형의 자문과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익 창출이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화된 전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 일자리에서부터 지역사회 교통과 주거문제 해결,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과 활동의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사 맥락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시 일반 기업처럼 표준화된 지원매뉴얼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출현이 비교적 새로운 사회현상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도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설립과 유형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대부분 민간재단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아쇼카 재단, 스킴재단, REDF¹²⁾, SVP¹³⁾, Seedco¹⁴⁾ 등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지원기관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방식으로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받는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단위, 국가 단위의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이 컨소시움들이 회원인 사회적기업에게 회계, 경영자문, 훈련, 마케팅, 공동입찰준비, 기금 마련 등의 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상공회의소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상공회의소도 보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자들은 보다 기업적인 문화를 도입하고, 상공회의소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효과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0년 제3섹터 조직과 비영리조직을 진흥하고 감독하기 위해 비영리협회지원기관(Agenzia

-
- 12)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REDF)는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며, 1997년부터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경영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13) Social Venture Partners(SVP)는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에 2개 지부, 일본에 2개 지부, 미국에 2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들이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음.
 - 14) Structured Employment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eedco)는 뉴욕시에 소재한 비영리 지역사회개발중개기관임. 정부와 재단, 기업 등의 대규모 기관과 지역 내 소규모 비영리단체 간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교량역할을 함. 재정, 하청사업 등을 통해 지역단체를 지원할 경우, 단체실무자들이 Seedco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훈련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단체의 역량강화와 재정지원 효과성을 극대화함. 2001년 비영리단체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Nonprofit Venture Network 사업을 시작함.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설립 이전의 과정을 지원하거나,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단계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함.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비영리단체들을 지원네트워크로 묶어서,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을 함.

per le ONLUS)을 설립하였으나, 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역, 2009).

- 영국은 통산산업부 지원으로 2002년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Coalition)가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주요 파트너이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역개발청(RDAs)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Business Link 서비스를 사회적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있다. 이외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재단들이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¹⁵⁾’ 조항을 신설하였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 경영지원 등)에 시장은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자치구 조례에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①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②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③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④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등임.

6) 적정한 자금 조달 여건 조성

-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창업 이후에도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나, 일반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시장이율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설립과 발전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 이탈리아는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 책임투자기금이 활성화되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연간 매출의 3%를 마르코니 연대기금에 투자하며, 이 기금으로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컨소시움은 은행과 지역협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좋은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전국연합체(컨소시움)는 연합체에 속한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저리의 중단기 자금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회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시장 금융제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자금 대출을 해준다. 국영은행인 윤리은행(Bank Etica)은 사회적 협동조합 컨소시움과 협동조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대출을 해준다.
- 미국 칼버트 사회책임투자재단(Calvert Social Investment Foundation)은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조직에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금은 저가의 주택건설, 마이크로크레딧, 소규모 비즈니스, 사회적기업, 커뮤니티서비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Good Capital Fund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 투자펀드운용회사로 순수 투자금만으로 성립된 미국 최초의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라고 할 수 있다. Good Capital Fund와 비슷한 유

형의 사회적기업 투자펀드운용회사가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이정환 역, 2008).

- 영국 정부는 낙후 지역의 사업체와 사회적기업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기 위해 지역사회발전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CDFIs)을 지원하고 있다. CDFIs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에게 장기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Adventure Capital Fund를 설립하였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해주며,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운영자를 위한 금융이해 및 자금조달 교육자료 개발과 배포, 교육사업을 하였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기관에 보증을 해주고 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를 확보하여 사회적기업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7) 교류 및 협력지원

- 사회적기업 발전에 혁신의 모방도 중요하므로 국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및 사회적기업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발전하는데 사회적기업과 정부, 사회적기업과 기업, 그리고 국내·외 사회적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적기업의 관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이 거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사회적기업의 연계보다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 전문가 간의 연계가 더 중요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적기업을 공공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영

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정부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양자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조된다.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행정 간의 협력관계를 위해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증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공공서비스와 물품을 구매하는 부서의 담당자용 업무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계약을 수주하는데 필요한 매뉴얼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에게 배포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교류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일관성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002년 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Coalition) 설립을 지원하였다. 사회적기업연합회 설립으로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전국 차원의 조직에 대해 정부사업 입찰 요청 등과 같은 전략적 지원을 하였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 대표 조직들이 정책결정자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06년 내각부에 제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¹⁶⁾을 핵심부서로 설립하였다.
- 유럽위원회는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각국 정부에게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의 연락창구 역할을 하는 명시적으로 단일화된 부서를 두고, 동시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행정부서들 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라고 제안하고 있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역, 2010). 유럽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발전에 사회적기업 간에, 또는 사회적기업의 국제 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실무자 간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교류 행사, 전문지식의 국가 간 공유 촉진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의 행사 및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16) 제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이 2010년 5월 시민사회청으로 바뀜. 시민사회청(the Office for Civil Society)은 자선단체, 사회적기업, 자원활동조직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스콜재단은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한 제3섹터 종사자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고 상호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www.socialedge.org)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스콜재단은 사회적기업이 기업 및 주요 인사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을 정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네트워크를 정책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첫째,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지원, 둘째,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 자치구 조례에서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직접 지원

1)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은 상환을 전제하지 않는 지원금과 상환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금은 상환을 전제하지 않는 지원금이다.
- 임금비 보조는 노동시장에서 탈락된 생산성이 낮은 근로취약계층을 한

시적으로 고용하여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시장통합형 사회적기업에 국한하여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는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의 하나인 사회재통합기업(Insertion Enterprise; 노동시장통합기업)에게 일자리 1개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2년간 2회까지 최장 4년 계약으로 고용된다(노동부·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벨기에의 경우에도 정부는 사회재통합기업에 대해 근로자 1명당 4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매년 25%씩 줄어든다(김혜원, 2010).

- 미국의 스킨재단은 Skoll Awards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 2006년에는 16명의 수상자들에게 총 1,3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였는데, 이 상금은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REDF도 독자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 조직이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여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지원은 지원종결전략에 따라 4단계로 진행한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Echoing Green¹⁷⁾의 경우에도 엄밀한 선정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하여 재정지원을 한다. 재정지원은 2년간 하며 그 내용은 개인과 2명 이하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지원은 2년간 총 6만달러를 6개월마다 일종의 봉급 개념으로 지급하며, 파트너십 지원은 프로젝트별로 2년간 9만달러를 6개월마다 지급한다. 재정지원은 인건비 개념이지만 사용목적은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아쇼카재단도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영국은 밀레니움위원회가 1억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17) 벤처캐피탈로 성공한 기업인들과 The Atlantic Philanthropies이 1987년 설립한 재단으로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목표로 함. 2006년까지 30개 국가에서 450여명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여 총 2,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데, 1단계에서 선발된 사회적기업가는 상금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단계를 거쳐 2단계에도 선정된 사회적기업가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시작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 상환을 전제로 하나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사회적기업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에게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에게 장기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Futurebuilds Fund, Adventure Capital Fund를 설립하였다. 이탈리아 국영은행인 윤리은행(Bank Etica)은 사회적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대출을 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도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8조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자치구 조례에서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경영지원

- 영국의 사회적기업 조사에 의하면 경영지원을 적절히 활용한 사회적기업이 그렇지 않은 사회적기업에 비해 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시장이나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기업 창업단계에서부터 발전단계별, 업종별로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경영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국가직업표준을 개발하였고, 컨설턴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턴트 훈련자료를 개발하여 경영지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Cabinet Office, 2006).
- 미국의 경우 전문자원봉사자(pro-bono)들이 사회적기업에게 경영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민간지원기관들이 있다. Social Venture Partners(SVP)는 전문가(파트너)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비영리기관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인데, SVP에 가입한 전문가들은 1년에 최소 5,500달러를 기부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비영리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초기단계의 경영 및 기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Echoing Green의 경우 경영지원은 인터넷, 회의,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choing Green은 프로보노(전문성 기부)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및 컨설팅 회사를 섭외하여 이들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며, 사회적기업가들이 멘토로서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도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교육·훈련지원

-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근로자 및 관리자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 영국은 사회적기업 관리자에 대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국가직업표준으로 개발하였고, 웹사이트(www.setas.co.uk)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고용훈련프로그램(Train to Gain)에 사회적기업도 참여 대상 사업체로 포함시키고, 사회적기업의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무료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의2)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4)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 영국의 보건부는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 위탁하여 사회적기업이 보건 및 돌봄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의 위탁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계약담당공무원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체결된 사례들을 홍보한다는 점이다. 조달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은 구매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처 다양성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정부가 협

소한 법적 틀 내에서만 서비스 위탁계약을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장려한다(Cabinet Office, 2006).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 우선구매 촉진)와 자치구 조례(우선구매 촉진)에서도 시장과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조세감면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에서 거의 활용하는 지원방식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부가세 감면을 받으며, 이탈리아는 취약계층 일자리형 사회적기업에게 국가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법인세율, 부가세율을 낮춰준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역, 2010).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시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자치구 조례에도 구청장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장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 및 지원 현황

제1절 중앙정부

제2절 서울시

제3절 자치구

제 3 장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체계 및 지원 현황

제1절 중앙정부

1. 추진체계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소관의 사회적기업과가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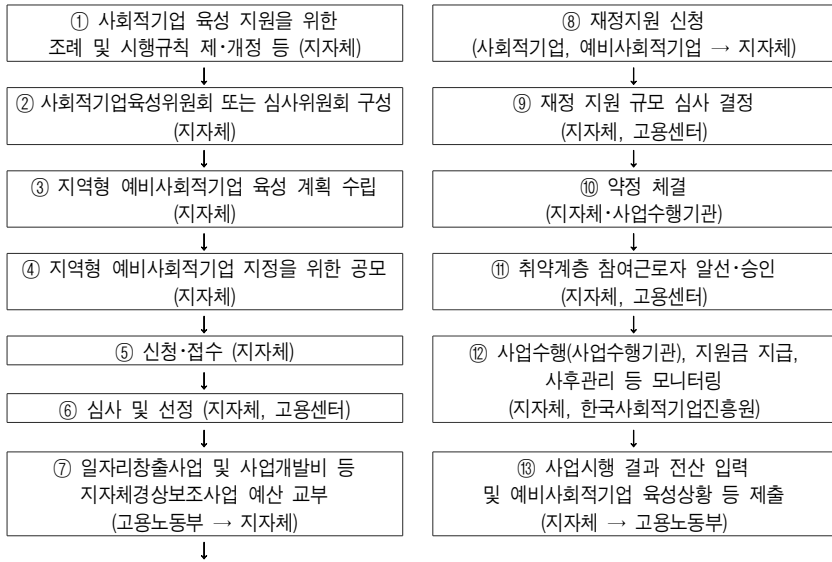
—2010년 6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그리고 2010년 6월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경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체계가 변하고 있다. 「사회

18) 사회적기업과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②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③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④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⑥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교류 지원, ⑦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⑨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⑩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⑪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⑫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 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고 명시함으로써 법제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역할 강화를 밝히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이며,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권한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 <그림 3-1>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 지침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 마성균, 2010,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과 과제", 「2010 사회적기업 제주학술대회 자료집」, p.60.

<그림 3-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 지침

2. 육성지원사업

1) 직접지원사업

(1) 재정지원

○인건비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재정지원사업이며, 이 중에서도 인건비 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사회적일자리사업체(예비사회적기업)는 최대 2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도 심사를 통과하면 최장 3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10년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93만 2천원 수준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2010년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에는 인건비 10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0%로 차츰 지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경우 1년차에 인건비 100%, 2년차에 90%를 지원받게 된다.

- 이외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채용 회계, 마케팅 등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기업당 3명 범위 내에서 1인당 150만원 한도로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연차별로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2010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의 72%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한해 2010년부터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개발, 기술개발 등의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¹⁹⁾. 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이내, 예비 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국비 80%, 지방비 20%)를 배분하고 있다(마성균, 2010).

<표 3-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총계	121,541	139,772	188,463	148,734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117,972	125,989	158,748	107,457
예비사회적기업	114,463	110,599	109,895	87,916
사회적기업	3,509	15,390	48,853	19,541
사회적기업 지원	1,836	12,224	28,036	39,585
네트워크	-	1,000	1,012	1,012
전문인력 인건비	-	4,896	13,014	7,200
시설·운영비 대부	-	2,000	3,000	-
경영컨설팅	1,700	3,150	4,999	5,174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800	800	800
기타	136	378	1,154	1,154
사업개발비	-	-	1,501	18,521
사회보험료 지원	-	-	-	4,524
소셜벤처	-	-	2,466	1,200
운영비	1,733	1,559	1,679	1,692

자료 : 김혜원, 2010,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 「2010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9)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 예시 : ①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②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③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연구용역비, ④ 시제품 제작비, 예술, 공예 기획 등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 ⑤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⑥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⑦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⑧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⑨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 (자료 : 마성균, 2010,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과 과제", 「2010 사회적기업 제주학술대회 자료집」)

-사업개발비 규모는 국비 155억원, 지방비 39억원을 합해 총 194억원으로 2010년 9월 현재 128억원이 16개 광역시·도에 교부되었다.

(2) 경영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자체 지정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컨설팅을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백만원 이상은 경영지원 모니터링기관에서 심사를 한다.
- 컨설팅은 지원금액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컨설팅 비용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 되며, 컨설팅 신청기관의 자부담은 없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3년간 총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이 3백만원에서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대상이 되며, 컨설팅을 받는 사업체가 3백만원 초과분의 10%를 부담한다. 컨설팅 비용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이고 인증 1년이 지난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2년 사회적기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천만원 초과분의 20%는 컨설팅을 받는 사회적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운영계획수립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운영 지침 제·개정 -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전문분야 컨설팅 검토·승인·비용지급
권역별 지원기관 ²⁰⁾	- (예비)사회적기업에 경영지원 제도 적극 안내 -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 홍보, 컨설팅 제공으로 사회적기업 인증화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제출 경영지원 신청서 검토와 상호협의하여 컨설팅 제공 기관, 분야, 기간 등을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회계프로그램 수요 파악과 협의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 및 종류를 선택 결정 - 회계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현장실사, 출력물 검토를 통하여 확인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회계 관련 교육 실시 - 고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영지원 신청내용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컨설팅 제공기관의 3자 경영지원협약 체결(컨설팅 실시 중간에 현장실사 1회 이상 실시) - 사후관리
경영지원 모니터링기관	- 경영컨설팅 제공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의 경영컨설팅 지원활동 현장실사를 통해 모니터링 - 3백만원 초과 컨설팅에 대한 타당성 심사 - 경영컨설팅 사업평가 실시 및 경영지원 제공 성공·실패사례 분석 사례집 발간 및 경연대회 개최 등 홍보 강화 - 사회적기업 경영진단 분석도구 및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제공기관	- 고용지원센터의 승인된 경영컨설팅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후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수행 시마다 수행일지 작성,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예비) 사회적기업	- 고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신청 - 승인된 경영 컨설팅에 성실히 응하고 컨설팅 종료 후 실제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2010년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운영지침.

20) 지원기관 역할은 크게 8가지로, ①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②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③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④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⑤ 사회적기업·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지원, ⑥ 지역별 프로그래밍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⑦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⑧ 기타(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하는 업무 혹은 상황변화에 따라 과업지시서 범위를 넘어 추가되는 업무 수행 등임. 서울 지역에는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한국경영·기술컨설팅트럼회의 두 개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자료 : <http://www.socialenterprise.go.kr>).

2) 외부환경조성사업

(1)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 사회적기업가나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교육과정은 사회적기업가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과정과 전문경영기술 및 세부영역별 교육을 위한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은 일반과정, 창업전문과정, 실무전문과정, 연구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총 17개 기관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과정별 참여기관 현황은 다음 <표 3-3>과 같다.

○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개설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학위과정 및 트랙,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과정 등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대학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지원받은 대학은 모두 6개 대학²¹⁾이다.

○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및 과목 수강생 장학금 지급 지원

— 2009년부터 시행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34명이 총 18,570천원을 받았다²²⁾.

21)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개설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사업 : 중앙대학교(학위), 고려대학교(연계전공), 숙명여자대학교(트랙), 인제대학교(학위), 명지대학교(학사학위/전공), 목포대학교(연계전공+비학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22)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표 3-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사업 현황

연도	과정별	기관명	기관 수
2008	통합과정	열린사이버대학,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송실대학교 기업&사업연구센터, (사)사회적기업 청람,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재)대구기독교청년회YMCA,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주)지비미디어컨설팅그룹,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강원도광역자활센터	11
	특화과정	한겨레경제연구소, KAIST 경영대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대 데뷔 네트워킹센터 희망청,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자바르데, (재)행복나눔재단, 원주한살림생협, (주)이장, 호서대학교	9
2009	통합과정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경원대학교,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재)대구기독교청년회YMCA,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8
	특화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유)soopoong, 함께일하는세상(주), (재)행복나눔재단, 하자센터(서울청소년직업체험센터), 대안일터 큰 날개, (주)나눔과샘 제일회계법인, (주)이장,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1
2010	일반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앙트러프러너십센터, 경원대학교, 인천광역자활센터, (사)일하는공동체, (사)풀뿌리 사람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기독교청년회(YMCA),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9
	창업전문과정	(사)씨즈, 행복나눔재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대구사회연구소	4
	실무전문과정	(주)트래블러스맵,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
	연구전문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사)사회적기업연구원	2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2)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

○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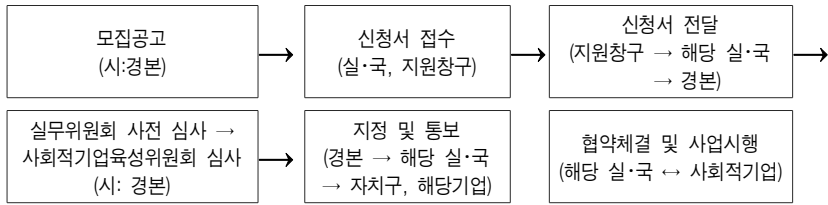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육성법」(16조의2)에서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홍보를 위해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 한마당 축제는 7월 7일 서울광장 및 청계광장에서 개최되었다.

-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및 수기공모작 시상식
 - 성공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상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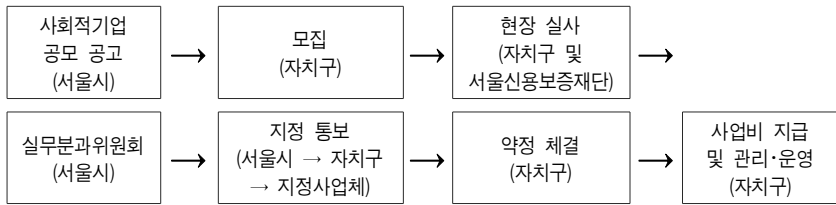
제2절 서울시

1. 제도 및 행정체계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는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육성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다.
- 행정체계
 - 서울시의 경우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팀, 사회적기업팀, 직업능력개발팀, 공공일자리팀의 4개 부서가 배치되었고, 사회적기업팀이 (예비)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기업팀은 팀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서울시 실, 국, 본부에서 맡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관리업무(<그림 3-2> 참조)를 2011년부터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그림 3-3> 참조).



〈그림 3-2〉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및 지정 절차



〈그림 3-3〉 2011년 이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및 지정 관리체계

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지원사업

-서울시는 2009년 9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육성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 1, 2, 3차 공모를 통해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총 252개 지정되었고, 이 중에서 중도 포기한 사업체가 7개이다. 2010년 11월 말 현재 4차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총예산은 208억 5,850만원이다. 이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194억 4천만원으로 총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일반 인력은 1주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

로 1인당 월 93만 2천원을, 전문 인력은 월 150만원을 받는다. 사업체당 일반 인력 50명 이내와 전문 인력 1명을 포함해 최대 51명까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체당 지원받은 평균 인원은 일반 인력이 9명, 전문 인력이 1명으로 총 10명 정도이다. 인건비는 1년간 지원을 받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분기별로 그 지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분기별 평가를 통해 기간 연장 후 1~3개월은 인건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4~6개월은 40%, 7~9개월은 30%, 10~12개월은 20%로 단계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2010년 사업개발비 중에서 서울시 자체 사업개발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 사업개발비로 12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다.

○경영지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제1단계 경영컨설팅 지원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설립 또는 경영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사항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것이다. 일자리플러스센터(1개소)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7개소)의 상담사 31명이 컨설팅을 한다.

-제2단계 경영컨설팅 지원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 인사, 노무, 홍보, 마케팅, 경영지원 등 분야별로 전문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전문컨설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며, 전문컨설팅트 인력풀은 3인 1조로, 32개 그룹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업체당 1년간 96시간 이내에서 맞춤형 전문방문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치구 공무원 교육

-2010년에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등을 4회

실시하였다. 과장급 회의가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이해 교육(1회)과 현장실사 교육(2회)을 하였다. 향후에도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판매시설 설치

–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시설을 2011년 1개소 설치하여 시범운영한 후에 성과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3절 자치구

1. 제도 및 행정체계

○사회적기업 육성 선거공약

– 선거공약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제시한 민선 5기 자치구청장은 25개 자치구청장 중에서 17명(68.0%)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이는 향후 자치구 차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확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표 3-4> 민선5기 구청장의 사회적기업 육성 선거공약 여부

구분	자치구	개 (%)
선거공약 포함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17개 (68.0)
선거공약 미포함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8개 (32.0)

○행정체계

–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팀(2010년 8월 말 기준)이 신설된 자치구는 용산구, 양천구, 금천구의 3개 자치구

이다. 용산구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2010년 4월에 고용정책과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양천구와 금천구는 2010년 8월 각각 일자리 정책과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등의 5개 자치구도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지역경제과 내에, 강남구는 일자리정책과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2010년 12월말까지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32.0%)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업무 전담팀을 신설한 예정이다(<표 3-5> 참조).

-사회복지과 내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는 7개이며, 이 중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의 3개 자치구는 자활고용팀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의 4개 자치구는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팀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표 3-5> 참조).

<표 3-5> 자치구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와 부서명(2010년 8월말 기준)

자치구	전담행정부서 유무	행정부서명	설립시기	현 담당행정부서명
종로구	X	-	2010년 4월	복지환경국 일자리창출추진단 희망일자리추진팀
중구	X	-	2010년 3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일자리총괄추진반 일자리창출팀
용산구	○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정책과 사회적기업팀	2010년 4월	-
성동구	X	-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총괄팀
광진구	X	-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
동대문구	X	-	2009년 5월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창출추진단 취업정보팀
중랑구	X	-	2010년 4월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창출추진단 정책팀
성북구	예정	-	2011년 1월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

〈표 계속〉 자치구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와 부서명(2010년 8월말 기준)

자치구	전담행정부서 유무	행정부서명	설립시기	현 담당행정부서명
강북구	X	-	-	주민생활국 일자리정책추진단 사회적일자리팀
도봉구	X	-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
노원구	X	-	2010년 4월	일자리추진반 일자리팀
은평구	X	-	2010년 8월	재정경제국 사회적일자리추진반 취업지원팀
서대문구	예정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2010년 10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마포구	X	-	2010년 7월	주민생활국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일자리정책팀
양천구	○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2010년 8월	-
강서구	X	-	2010년 4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일자리총괄팀
구로구	X	-	2010년 7월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경영지원팀
금천구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2010년 8월	-
영등포구	X	-	2010년 1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정책팀
동작구	예정	-	2011년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팀
관악구	예정	-	2010년 10월	지식문화국 일자리사업과 일자리기획팀
서초구	X	-	-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대책추진단
강남구	예정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2010년 9월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송파구	X	-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강동구	X	-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희망일자리추진팀

주 : 현재 해당하는 경우는 '○'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X'로 표시.

○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2010년 8월말 기준)한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9개(36.0%) 자치구이며,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자치구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의 12개(48.0%) 자치구이다.
- 용산구가 2009년 7월에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였고, 마포구가 2009년 10월, 중랑구가 2009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0년 전반기에는 종로구, 동작구, 송파구 등 3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하였고, 후반기 들어서 은평구, 강남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하였다. 2010년 12월말 기준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84%)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갖추게 된다(<표 3-6> 참조).

<표 3-6>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현황(2010년 8월말 기준)

구분	자치구	
조례제정(9개)	2009년	용산구(7월), 마포구(10월), 중랑구(12월)
	2010년	종로구(5월), 송파구(5월), 동작구(7월), 은평구(8월), 강남구(8월), 강동구(8월)
조례제정 진행 및 예정 (12개)	2010년	양천구(9월), 영등포구(9월), 서대문구(10월), 강서구(11월), 동대문구(11월), 성북구(11월), 금천구(12월), 구로구(하반기)
	미정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서초구
미정(4개)		중구, 강북구, 도봉구, 관악구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의해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의 3개(12.0%) 자치구이다. 2010년 8월말까지 21개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표 3-7> 참조).

-용산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외에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감사담당관의 총 4개국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추진반장을 포함해 주민생활과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의 총 4개과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종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산구, 마포구와 달리 복지환경국장 1명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서울지방 고용노동부 2인, 민간인 7명으로 용산구(2명), 마포구(4명)에 비해 민간인 참여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표 3-7> 참조).

<표 3-7>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현황(2010년 8월말 기준)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원 소속					합계(명)
	(부)구청장	의회위원	자치구 공무원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종로구	1	2	복지환경국장	서울지방 고용노동부 (2)	학계/연구기관(3), 기업(1), 사회적기업지원기관(2), 시민사회단체(3)	15
용산구	1	2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서울지방 고용노동부 (1)	학계(1), 사회적기업네트워크(1)	10
마포구	1	1	일자리추진반장, 주민생활과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울지방 고용노동부 (1)	학계/연구기관(2), 함께일하는재단(1), 자활센터(1)	11

2. 예산 및 종합계획

○ 예산

-2009년의 경우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용산구가 유일하다. 용산구는 2009년에 5억 7백만원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배

정하였으나, 2010년에는 자치구 차원의 예산 배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2009년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회원이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 설립 초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였다. ‘더 좋은 세상’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연계형 사회적기업의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에 소개하고 있다. ‘더 좋은 세상’은 고용노동부의 2010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대상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서 자치구 차원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표 3-8> 참조).

-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추경을 포함해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4개 자치구이다. 성북구, 양천구 등 2개 자치구는 추경예산을 편성 중이다. 2010년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6개(24.0%)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6개 자치구 중 양천구의 관련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로구가 1억 3,980만원, 영등포구가 3천 400만원(자치구 1천 400만원, 보조금 2,000만원), 마포구가 1천 300만원, 성북구가 972만원의 순이며, 관악구가 250만원으로 가장 적다. 예산 확보가 된 6개 자치구의 예산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참조).
- 2010년 6개 자치구 예산은 총 9억 610만원이며,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억 6,000만원(17.7%), 사업개발비가 4억 2,830만원(47.3%), 홍보 및 교육훈련비가 1,172만원(12.9%), 기타 운영비가 3억 608만원(33.8%)이다 (<표 3-8> 참조).

〈표 3-8〉 자치구 사회적기업 예산 현황(2010년 8월말 기준)

(단위 : 만원)

연도	자치구	예산				항목				
		구비 (책정)	구비 (추경)	보조금	소계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및 시설지원비	홍보 및 교육 훈련비	기타 운영비	
2009	용산구	50,708	-	-	50,708	-	20,000	400	30,308	
2010	예산 배정	종로구	-	13,980	-	13,980	-	13,980	-	-
		마포구	1300	-	-	1,300	1,000	200	-	100
		영등포구	-	1400	20,000	3,400	-	3,400	-	-
		관악구	250	-	-	250	-	250	-	-
	추경 중	성북구	-	972	-	972	-	-	772	200
		양천구	-	15,000	-	15,000	15,000	-	-	-

주 : 동작구는 9월 3일 현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25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함.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는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동대문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의 5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2010년 8월말 기준)했다고 응답하였으나, 계획내용이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실무진이 작성한 업무보고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의 12개 자치구는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9〉 자치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 현황(2010년 8월말 기준)

구분	자치구		개(%)
수립	2009년	영등포구(12월)	5(20.0)
	2010년	송파구(3월), 도봉구(5월), 양천구(7월), 동대문구(8월)	
수립 진행/예정	2010년	성북구(9월), 은평구(9월), 관악구(9월), 강남구(10월), 강동구(11월), 서대문구(12월), 금천구(12월), 구로구(하반기)	12(48.0)
	2011년	강서구(1월)	
	미정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없음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8(32.0)

3.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내의 (예비)사회적기업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현재(2010년 8월 말 기준) 하고 있다는 자치구는 마포구와 동작구 등 2개 자치구이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이다. 2010년 말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40.0%) 자치구 정도가 관내의 (예비)사회적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표 3-10> 참조).

○사회적기업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한 적이 있는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의 10개(40.0%) 자치구이다. 토론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의 5개 자치구이다(<표 3-10> 참조).

○재정 및 경영지원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4개 자치구에서 관내의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경우 시설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가 유일하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였다(<표 3-10> 참조).

○작업 및 사무 공간 임대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작업 및 사무공간 임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표 3-10> 참조).

○우선구매 촉진 및 조세감면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및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지원했다는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

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의 15개(60.0%) 자치구이다(<표 3-10> 참조).

-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는 구청장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010년 8월말 현재 자치구 중에서 조세감면을 시도한 자치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홍보 및 기타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홍보를 지원하였다는 자치구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을 비롯한 19개(76.0%) 자치구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는 광진구와 사회적기업(좋은 세상 베이커리) 간 MOU 체결을 통한 일자리 알선과 도봉구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인증대비 상담이 있다(<표 3-10> 참조).

<표 3-10>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현황(2010년 8월말 기준)

자치구	지원사업 유형									
	(예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토론회 등의 개최	재정 지원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작업 및 사무 공간 임대	우선 구매 촉진	조세 감면	홍보	기타
종로구	X	○	○	X	X	X	○	X	○	X
중구	X	X	X	X	X	X	X	X	○	X
용산구	X	○	X	X	예정	X	○	X	○	X
성동구	X	X	X	X	X	X	X	X	X	X
광진구	X	X	X	X	X	X	X	X	○	○
동대문구	예정	○	X	X	X	X	○	X	○	X
중랑구	X	X	X	X	X	X	○	X	○	X
성북구	X	예정	X	X	X	X	X	X	X	X
강북구	X	X	X	X	X	X	X	X	X	X
도봉구	예정	○	X	X	X	X	○	X	○	○
노원구	예정	예정	X	X	X	X	○	X	○	X
은평구	X	○	X	X	X	X	○	X	○	X
서대문구	예정	X	X	X	X	X	X	X	○	X

〈표 계속〉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현황(2010년 8월말 기준)

자치구	지원사업 유형										
	(예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토론회 등의 개최	재정 지원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작업 및 사무 공간 임대	우선 구매 촉진	조세 감면	홍보	기타	
마포구	○	○	○	○	X	X	○	X	○	X	
양천구	예정	예정	X	X	X	X	○	X	○	X	
강서구	예정	○	X	X	X	X	X	X	○	X	
구로구	X	X	X	X	X	X	○	X	X	X	
금천구	X	X	X	X	X	X	X	X	○	X	
영등포구	X	○	○	X	X	○	○	X	○	X	
동작구	○	○	X	X	X	X	○	X	○	X	
관악구	X	X	○	X	X	X	○	X	○	X	
서초구	예정	예정	X	X	X	X	○	X	○	X	
강남구	예정	예정	X	X	X	X	X	X	X	X	
송파구	X	X	X	X	X	X	X	X	X	X	
강동구	X	○	X	X	X	X	○	X	○	X	
합계	해당	2	10	4	1	0	1	15	0	19	2
	예정	8	5	0	0	1	0	0	0	0	0
	비해당	15	10	21	24	24	24	10	25	6	23

주 : 현재 해당하는 경우는 '○'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X'로 표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

- 용산구는 관내의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회원'이 구상 중이던 재활용 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의 설립 초기단계부터 관여하여 작업 공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세상'은 2009년 2월 고용노동부의 지역연계형 사회적일자리사업(예비사회적기업)대상에 선정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아이디어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발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용산구청의 협조가 결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표 3-11> 참조).
- 마포구는 서울시처럼 공모와 심사를 통해 2010년 8월말 현재 예비사회

적기업 1개를 선정하여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표 3-11>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의 8개 자치구이다(<표 3-11> 참조).

<표 3-11>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사례 현황(2010년 8월 말 기준)

구분	자치구	육성내용
시행	용산구	사회복지법인과 협약체결로 초기 시설비 및 운영비를 50% 지원해 '더 좋은 세상' 설립
	마포구	2010년 6월 교육콘텐츠 개발업체에 사업비(인건비) 지원
계획 중	중구	시설비 등 지원
	성동구	복지 관련 분야 업무에 인건비, 경영지원, 홍보비 등 지원
	동대문구	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도봉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 사업 발굴,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스쿨 개최 등
	은평구	이랑푸드(친환경 급식재료 공급) 지원(설립시기 2011년 1월)
	마포구	공모 중
	양천구	공모를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지원 예정
	강동구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정, 운영비 지원, 설명회 개최
미정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4.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단에 대한 의견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6급)과 7~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정책사업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50명의 공무원이 응답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 참여

—응답자 50명 중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세미나, 아카데미,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22명(44.0%)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팀장급 이상의 경우 48.0%가 참여한 적이 있으며 7~9급의

경우 40.0%가 참여한 적이 있어, 팀장들이 사회적기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2010년 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계
팀장급 이상(6급)	12(48.0)	13(52.0)	25(100.0)
실무자(7~9급)	10(40.0)	15(60.0)	25(100.0)
합계	22(44.0)	28(56.0)	50(100.0)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단별 필요도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업무담당자로서 필요한 정책수단 8가지 중에서 4점(필요) 이상을 받은 항목은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4.34점)’, ‘사회적기업 전담인력 보강(4.26점)’,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정보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4.22점)’, ‘자치구와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4.18점)’,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 중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4.16점)’, ‘고용노동부·서울시·자치구 간 네트워킹 구축(4.16점)’의 6가지이다. ‘사회적기업 예산 확충’과 ‘자치구 간 네트워킹’은 각각 3.88점과 3.96점으로 필요하다(4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가장 높은 4.34점(5점: 매우 필요)을 받아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가 매우 필요하다, 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92%가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고 지적하였다. 직급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13> 참조).
- ‘사회적기업 전담인력 보강’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4.26점을 받았다. 응답자의 46%가 매우 필요하다, 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88%가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고 대답하였다(<표 3-13>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정보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높은 4.22점을 부여하였다. 응답자의 46%가 필요하다, 42%가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88%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3-13> 참조).
- ‘자치구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에 대해서는 4.18점을 부여하였다. 응답자의 48%가 필요하다, 4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88%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표 3-13> 참조).
- ‘고용노동부·서울시·자치구 간 네트워킹 구축’의 경우 4.16점을 받았다. 응답자의 46%가 필요하다, 4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86%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3-13> 참조).
-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중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4.16점을 부여하였다. 응답자의 44%가 필요하다, 4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84%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표 3-13> 참조).
- ‘자치구 간 네트워킹 구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점)에 약간 못 미치는 3.96점을 부여하였다. 응답자의 54%가 필요하다, 2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8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3-13> 참조).
- ‘사회적기업 예산 확충’의 경우 제시한 8개 수단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3.88점을 받았다. 응답자의 54%가 필요하다, 22%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표 3-13> 참조).

〈표 3-13〉 자치구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단별 필요도

(단위 : 명(%), 점)

구분	필요도						평균 점수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합계		
사회적기업 예산 확충	1 (2.0)	3 (6.0)	8 (16.0)	27 (54.0)	11 (22.0)	50 (100.0)	3.88	
사회적기업 전담인력 보강	2 (4.0)	0 (0.0)	4 (8.0)	21 (42.0)	23 (46.0)	50 (100.0)	4.26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2 (4.0)	0 (0.0)	2 (4.0)	21 (42.0)	25 (50.0)	50 (100.0)	4.34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 중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2 (4.0)	0 (0.0)	6 (12.0)	22 (44.0)	20 (40.0)	50 (100.0)	4.16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정보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2 (4.0)	0 (0.0)	4 (8.0)	23 (46.0)	21 (42.0)	50 (100.0)	4.22	
사회적기업 업무 네트워킹 구축	고용노동부·서울시·자치구 간 네트워킹 구축	2 (4.0)	1 (2.0)	4 (8.0)	23 (46.0)	20 (40.0)	50 (100.0)	4.16
	자치구 간 네트워킹 구축	3 (6.0)	1 (2.0)	5 (10.0)	27 (54.0)	14 (28.0)	50 (100.0)	3.96
	자치구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2 (4.0)	1 (2.0)	3 (6.0)	24 (48.0)	20 (40.0)	50 (100.0)	4.18

주 : '매우 필요하지 않음' 1점, '필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필요' 4점, '매우 필요' 5점.

제4장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제1절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제2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현황

제3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결과

제 4 장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제1절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1. 사회적기업 신청 및 인증 현황

– 2010년 7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총 319개이며, 이중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은 73개(22.9%)이다(<표 4-1> 참조).

<표 4-1>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2007년-2010년 2차)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사회적 기업 수 (개)	73	56	18	21	10	16	6	12	17	17	15	17	8	12	12	9	319
%	22.9	17.6	5.6	6.6	3.1	5.0	1.9	3.8	5.3	5.3	4.7	5.3	2.5	3.8	3.8	2.8	100.0

자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go.kr>).

– 사회적기업 인증률(인증 사업체수/신청 사업체수)은 전국이 44.7%이며, 서울은 이보다 높은 54.9%이다(<표 4-2> 참조).

〈표 4-2〉 사회적기업의 신청 및 인증 현황(2007년-2010년 2차)

(단위 : 개, %)

구분		2007년 (1·2차)	2008년 (1·2·3·4차)	2009년 (1·2·3·4차)	2010년 (1·2차)	합계
전국	신청(a)	166	285	199	63	713
	인증(b)	52	164	77	32	319
	인증률(b/a)	31.3	57.5	38.7	50.8	44.7
서울	신청(c)	18	49	56	10	133
	인증(d)	14	35	20	4	73
	인증률(d/c)	77.8	71.4	35.7	40.0	54.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2. 사회적기업의 특성

1) 업종

—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전국의 경우 기타(32.0%)가 가장 많으며, 이어 사회복지(18.5%), 환경(17.9%), 간병·가사 지원(12.5%), 문화·예술·관광·운동(7.2%), 보육(5.0%), 교육(4.4%), 보건(2.2%)의 순으로 많다.

〈표 4-3〉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2007년-2010년 2차)

(단위 : 개(%))

업종별	교육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문화·예술 ·관광·운동	보육	산림보존 (관리)	간병·가사 지원	기타	합계
전국	14 (4.4)	7 (2.2)	59 (18.5)	57 (17.9)	23 (7.2)	16 (5.0)	1 (0.3)	40 (12.5)	102 (32.0)	319 (100.0)
서울	7 (9.6)	1 (1.4)	7 (9.6)	5 (6.8)	14 (19.2)	1 (1.4)	0 (0.0)	11 (15.1)	27 (37.0)	73 (100.0)

자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go.kr>).

— 서울은 기타가 37.0%로 가장 많으며, 이어 문화·예술·관광·운동 분야가 19.2%, 간병·가사 지원 분야가 15.1%,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9.6%, 환경 분야가 6.8%의 순이다. 서울은 전국에 비해 문화·예술·관광·

운동 분야와 교육 분야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와 환경, 보육 분야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2)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상법상 회사가 각각 42.9%, 43.8%로 가장 많다. 민법상 법인은 전국 23.8%, 서울 28.8%이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전국 16.9%, 서울 12.3%이다. 서울은 전국에 비해 민법상 법인 비중이 높은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은 전국 12.5%, 서울 12.3%이다(<표 4-4> 참조).

<표 4-4>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2007년-2010년 2차)

(단위 : 개(%))

구분	민법상 법인	상법상회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합계
전국	76(23.8)	137(42.9)	40(12.5)	54(16.9)	12(3.8)	319(100.0)
서울	21(28.8)	32(43.8)	9(12.3)	9(12.3)	2(2.7)	73(10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3) 사회적 목적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유형으로 보면 전국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48.9%, 혼합형이 24.1%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형이 15.0%,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1.9% 순이다. 서울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35.6%로 가장 많으나 전국(48.9%)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편이며, 기타형은 27.4%로 전국(15.0%)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표 4-5> 참조).

<표 4-5>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현황(2007년-2010년 2차)

(단위 : 개(%))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전국	156(48.9)	38(11.9)	77(24.1)	48(15.0)	319(100.0)
서울	26(35.6)	11(15.1)	16(21.9)	20(27.4)	73(10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4)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의 사업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이전의 사업형태를 보면 전국 사회적기업의 50.8%는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고, 18.2%는 자활공동체·자활센터에서 출발하였으며, 12.5%는 장애인직업시설·단체로부터 시작되었다.
-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는 45.2%이고, 자활공동체·자활센터가 모태가 된 사업체는 9.6%로 전국에 비하면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장애인 직업시설·단체가 모태가 된 사업체도 11.0%로 전국에 비해 그 비중이 낮다. 그러나 이전 사업형태가 기타 유형은 34.2%를 차지해 전국(18.5%)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표 4-6> 참조).

<표 4-6>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의 사업형태(2007-2010년 2차)

(단위 : 개(%))

구분	사회적일자리사업	자활공동체·센터	장애인직업시설·단체	기타	합계
전국	162(50.8)	58(18.2)	40(12.5)	59(18.5)	319(100.0)
서울	33(45.2)	7(9.6)	8(11.0)	25(34.2)	73(10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5) 고용규모

-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를 보면 전국의 경우 20명 미만인 사업체가 53.3%로 가장 많으며, 이어 20-50명 미만 사업체가 30.7%, 50-100명 미만 사업체가 13.2%, 100인 이상 사업체가 2.8% 순이다.
-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를 보면 역시 20인 미만 사업체가 56.2%로 가장 많으며, 이어 20-50인 미만 사업체가 28.8%, 50-100인 미만 사업체가 11.0%, 100인 이상 사업체가 4.1% 순이다(<표 4-7> 참조).

〈표 4-7〉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2007년-2010년 2차)

(단위 : 개(%))

구분	20인 미만	2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인 이상	합계
전국	170(53.3)	98(30.7)	42(13.2)	9(2.8)	319(100.0)
서울	41(56.2)	21(28.8)	8(11.0)	3(4.1)	73(10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주 : 기업별 인증신청 당시 인원임.

제2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현황

1. 신청·지정 사업체 규모

1) 사업체수 및 지정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신청한 사업체수는 제1차 284개, 제2차 219개, 제3차 221개 등 총 724개였다²³⁾. 724개 신청 사업체 중에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는 신청 사업체의 34.8%인 252개이다. 제1차 공모 지정률은 38.7%, 제2차 공모 지정률은 38.8%, 제3차 공모 지정률은 25.8%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수와 지정률

(단위 : 개, %)

공모 차수	신청 사업체수	지정 사업체수	지정률
1차	284	110	38.7
2차	219	85	38.8
3차	221	57	25.8
합계	724	252	34.8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3) 제1차 공모는 2009년 11월 25일~12월 24일에 하였고, 심사를 통해 지정된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과 서울시의 협약체결은 2010년 2월에 이루어짐. 제2차 공모는 2010년 2월 25일~3월 16일,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협약체결은 2010년 5월, 제3차 공모는 6월 23일~7월 12일,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협약체결은 9월에 이루어짐. 2010년 10월 제4차 공모가 진행 중임.

○분야별 지정 현황

- 724개 신청 사업체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교육 분야 사업체가 229개(31.5%)로 가장 많으며, 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223개(30.8%), 기타 분야가 142개(19.6%), 보건보육 분야가 130개(18.0%) 순이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42개 사업체의 경우²⁴⁾ 사회복지 분야가 95개(39.3%)로 가장 많으며, 이어 문화교육 분야가 73개(30.2%), 보건보육 분야가 41개(16.9%), 기타 분야가 33개(13.6%) 순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 분야는 신청 사업체의 42.6%가 지정되어 지정률이 가장 높으며, 이어 문화교육 분야 지정률은 31.9%, 보건보육 분야 지정률은 31.5%, 기타 분야 지정률은 23.2% 순이다(<표 4-9> 참조).

<표 4-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

분야	신청 사업체수	지정 사업체수	지정률
사회복지	223(30.8)	95(39.3)	42.6
보건보육	130(18.0)	41(16.9)	31.5
문화교육	229(31.5)	73(30.2)	31.9
기타	142(19.6)	33(13.6)	23.2
합계	724(100.0)	242(100.0)	33.4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2. 사업체 일반 현황

1) 설립연도

- 신청 사업체의 47.6%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설립되었다. 또한 지정 사업체의 45.2%가 2007년 이후 설립되었다(<표 4-10> 참조).

2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52개 사업체 중에서 중도탈락되거나 지정신청서 자료가 없는 10개 기관을 제외한 총 242개 사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함.

〈표 4-1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설립연도

(단위 : 개(%))

구분	2001년 이전	2001-2003년	2004-2006년	2007-2009년	2010년	합계
신청 사업체	157(21.7)	88(12.2)	133(18.4)	270(37.4)	74(10.2)	772(100.0)
지정 사업체	58(24.1)	35(14.5)	39(16.2)	83(34.4)	26(10.8)	241(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2) 사업체 소재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응모한 사업체의 11.3%는 종로구에 소재하며, 이어 마포구(11.3%), 서초구·강남구(각각 9.4%), 영등포구(9.2%), 중구(5.6%) 순이다(<표 4-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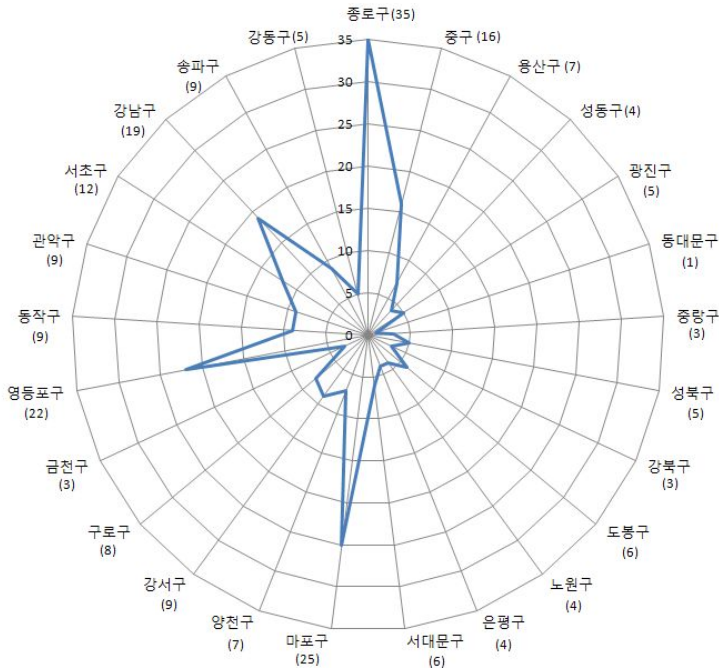
〈표 4-11〉 자치구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수

(단위 : 개(%))

자치구	신청 사업체수	지정 사업체수
종로구	80(11.3)	35(14.8)
중구	40(5.6)	16(6.8)
용산구	29(4.1)	7(3.0)
성동구	11(1.5)	4(1.7)
광진구	13(1.8)	5(2.1)
동대문구	15(2.1)	1(0.4)
중랑구	9(1.3)	3(1.3)
성북구	16(2.3)	5(2.1)
강북구	11(1.5)	3(1.3)
도봉구	10(1.4)	6(2.5)
노원구	12(1.7)	4(1.7)
은평구	14(2.0)	4(1.7)
서대문구	27(3.8)	6(2.5)
마포구	68(9.6)	25(10.6)
양천구	18(2.5)	7(3.0)
강서구	21(3.0)	9(3.8)
구로구	24(3.4)	8(3.4)
금천구	13(1.8)	3(1.3)
영등포구	65(9.2)	22(9.3)
동작구	21(3.0)	9(3.8)
관악구	22(3.1)	9(3.8)
서초구	67(9.4)	12(5.1)
강남구	67(9.4)	19(8.1)
송파구	27(3.8)	9(3.8)
강동구	10(1.4)	5(2.1)
합계	710(100.0)	236(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수도 종로구 35개, 마포구 25개, 영등포구 22개, 강남구 19개, 중구 16개, 서초구 12개 순으로 많다. 이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0개 미만이다. 자치구별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수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 참조).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그림 4-1> 자치구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체수

3) 사업지역

-신청 사업체 중에서 사업활동영역이 서울인 경우가 75.7%(54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국 17.0%(123개), 수도권 5.5%(40개), 전국 및 해외 1.7%(12개), 해외 0.1%(1개) 순으로 나타났다.

- 지정 사업체는 사업활동영역이 서울인 경우가 81.7%(19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국 13.3%(32개), 수도권 2.9%(7개), 전국 및 해외 2.1%(5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표 4-1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사업지역

(단위 : 개(%), %)

구분	서울	수도권	전국	전국 및 해외	해외	합계
신청 사업체	547(75.7)	40(5.5)	123(17.0)	12(1.7)	1(0.1)	723(100.0)
지정 사업체	197(81.7)	7(2.9)	32(13.3)	5(2.1)	0(0.0)	241(100.0)
지정률	36.0	17.5	26.0	41.7	0.0	33.3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3. 신청 및 지정사업체 특성

1) 조직형태

- 724개 신청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가 40.5%인 293개로 가장 많다. 민법상 법인은 37.4%인 271개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으며, 비영리단체가 13.1%인 95개, 사회복지법인이 8.3%인 60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조직형태

(단위 : 개(%), %)

구분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기타	합계
신청 사업체	271(37.4)	293(40.5)	60(8.3)	95(13.1)	5(0.7)	724(100.0)
지정 사업체	93(38.4)	78(32.2)	33(13.6)	37(15.3)	1(0.4)	242(100.0)
지정률	34.3	26.6	55.0	38.9	20.0	33.4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 242개 지정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이 38.4%인 93개로 가장 많으며, 상법상 회사는 32.2%인 78개로 두 번째로 많다. 비영리단체는 15.3%인 37개, 사회복지법인은 13.6%인 33개이다.

—조직형태별 지정률은 사회복지법인이 55.0%로 가장 높으며, 이어 비영리단체가 38.9%, 민법상 법인이 34.3%, 상법상 회사가 26.6% 순으로 높다(<표 4-13> 참조).

2) 사회적 목적 유형

- 신청 사업체의 사회적 목적 유형을 보면 혼합형이 45.0%(310개)로 가장 많으며, 일자리제공형이 39.9%(275개)로 두 번째로 많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9.6%(66개), 기타형은 5.5%(38개)이다.
- 지정 사업체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혼합형이 44.4%(104개), 일자리제공형이 41.5%(97개), 사회서비스제공형이 8.5%(20개), 기타형이 5.6%(13개) 순이다.
- 사회적 목적별 지정률은 일자리제공형이 35.3%로 가장 많으며, 이어 기타형이 34.2%, 혼합형이 33.5%, 사회서비스제공형이 30.3% 순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표 4-1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사회적 목적 유형

(단위 : 개(%), %)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신청 사업체	275(39.9)	66(9.6)	310(45.0)	38(5.5)	689(100.0)
지정 사업체	97(41.5)	20(8.5)	104(44.4)	13(5.6)	234(100.0)
지정률	35.3	30.3	33.5	34.2	34.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3) 연간 예산액 및 지원희망예산

- 신청 사업체 중에서 연간 예산액이 6억원 이상 사업체가 32.5%(223개)로 가장 많으며, 2-4억원 미만이 30.0%(206개)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2억원 미만이 21.4%(147개), 4-6억원 미만이 16.2%(111개)를 차지했다.

신청 사업체의 연간 예산액 평균은 6억 9,800만원이며, 최소값은 180만원, 최대값은 211억 1,290만원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 신청 사업체의 지원희망금액은 1-2억원 미만이 31.6%(21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3억원 이상이 30.1%(207개), 2-3억원 미만이 21.4%(147개), 1억원 미만이 16.9%(1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업체의 지원희망금액 평균은 2억 4,800만원이며, 최소값은 180만원, 최대값은 19억 5,88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예산액(6억 9,800만원)과 지원희망금액(2억 4,800만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청 사업체의 경우 연간예산액의 35.5%를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표 4-16> 참조).

<표 4-15>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연간 예산액

(단위 : 개(%), %)

구분	신청 사업체	지정 사업체	지정률	
연간 예산액	2억원 미만	147(21.4)	49(21.2)	33.3
	2-4억원 미만	206(30.0)	83(35.9)	40.3
	4-6억원 미만	111(16.2)	36(15.6)	32.4
	6억원 이상	223(32.5)	63(27.3)	28.3
	합계	687(100.0)	231(100.0)	33.6
평균값(천원)	698,000	551,000	-	
최소값(천원)	1,800	43,200	-	
최대값(천원)	21,112,900	10,000,000	-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 지정 사업체의 경우 연간예산액은 2-4억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으며, 이어 6억원 이상이 27.3%, 2억원 미만이 21.2%, 4-6억원 미만이 15.6%로 나타났다. 지정 사업체의 연간예산액 평균은 신청 사업체보다 1억 4,700만원이 적은 5억 5,100만원이며, 최소값은 4,320만원, 최대값은 100억원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 지정 사업체의 지원희망금액은 1-2억원 미만이 36.4%로 가장 많으며, 이어 3억원 이상이 27.7%, 1억원 미만이 18.2%, 2-3억원 미만이 17.7%

로 나타났다. 지정 사업체의 지원희망금액 평균은 2억 2,600만원이며, 최소값은 600만원, 최대값은 7억 5,800만원이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정 사업체의 경우 연간예산액(5억 5,100만원)의 41.0%인 2억 2,600만원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표 4-16> 참조).

<표 4-16>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연간 지원희망예산

(단위 : 개(%), %)

구분	신청 사업체	지정 사업체	지정률	
지원희망 예산액	1억원 미만	116(16.9)	42(18.2)	36.2
	1-2억원	217(31.6)	84(36.4)	38.7
	2-3억원	147(21.4)	41(17.7)	27.9
	3억원 이상	207(30.1)	64(27.7)	30.9
	합계	687(100.0)	231(100.0)	33.6
평균값(천원)	248,000	226,000	-	
최소값(천원)	1,800	6,000	-	
최대값(천원)	1,958,849	758,000	-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4) 현 고용인원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신청 및 지정 사업체로 구분하여 보면 <표 4-17>과 같다.
- 신청 사업체의 현 근로자 규모는 1-5명이 49.0%로 가장 많으며, 이어 6-10명과 20명 이상이 각각 18.9%, 11-20명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업체의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18.7명이며, 중위값은 6명이다. 사업체의 50%가 현재 6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셈이다.
- 신청 사업체 중에서 취약 계층 고용비율이 75~100%인 사업체는 33.7%로 가장 많고, 이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5~50%인 신청 사업체는 32.6%,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75%인 사업체는 20.9%,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5% 이하인 사업체는 12.8% 순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7〉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현 고용인원

(단위 : 개(%), %)

구분		신청 사업체	지정 사업체	지정률
전체 근로자	1-5명	325(49.0)	101(43.7)	31.1
	6-10명	125(18.9)	50(21.6)	40.0
	11-20명	88(13.3)	34(14.7)	38.6
	20명 초과	125(18.9)	46(19.9)	36.8
	합계	663(100.0)	231(100.0)	34.8
	평균값(명)	18.7	18.9	-
	중위값(명)	6	6	-
	최소값(명)	1	1	-
	최대값(명)	1,040	420	-
취약계층 근로자	1-5명	250(57.6)	85(54.5)	34.0
	6-10명	78(18.0)	30(19.2)	38.5
	11-20명	58(13.4)	17(10.9)	29.3
	20명 초과	48(11.1)	24(15.4)	50.0
	합계	434(100.0)	156(100.0)	35.9
	평균값(명)	14.3	15.6	-
	중위값(명)	4	4	-
	최소값(명)	1	1	-
	최대값(명)	900	346	-
취약계층 고용비율	25% 이하	55(12.8)	22(14.1)	40.0
	25-50% 이하	140(32.6)	48(30.8)	34.3
	50-75% 이하	90(20.9)	30(19.2)	33.3
	75-100% 이하	145(33.7)	56(35.9)	38.6
	합계	430(100.0)	156(100.0)	36.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주 : 취약계층고용비율 = [취약계층근로자인원수/전체근로자수] * 100

- 지정 사업체의 현 근로자 규모는 1-5명 사이의 사업체가 43.7%로 가장 많고, 이어 6-10명 사이의 사업체가 21.6%, 20명 이상의 사업체가 19.9%, 11-20명 사이의 사업체가 14.7%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사업체의 사업체당 평균근로자수는 18.9명이며 중위값은 6명이다.
- 지정 사업체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75-100%인 사업체는 35.9%로 가장 많고, 이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5-50%인 사업체는 30.8%,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75%인 사업체는 19.2%,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5% 이하인 사업체는 14.1% 순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5)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 신청 사업체의 58.8%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정 사업체의 62.4%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사업체의 26.5%가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정 사업체의 24.5%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정 사업체의 21.2%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정 사업체의 17.2%는 저소득층·수급대상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4-18> 참조).

<표 4-1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단위 : 개(%))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신청 사업체	지정 사업체
일반시민	36(8.5)	12(7.9)
문화소외계층	10(2.3)	3(2.0)
취약계층	27(6.3)	6(4.0)
저소득층, 수급대상자, 노숙인	69(16.2)	26(17.2)
고령자	71(16.7)	32(21.2)
장애인	100(23.5)	37(24.5)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신용불량자 등	15(3.5)	6(4.0)
장기요양자, 복지시설, 환자 등	59(13.8)	23(15.2)
아동, 청소년, (대)학생	110(25.8)	40(26.5)
산모/아기 돌보미	5(1.2)	2(1.3)
새터민	20(4.7)	9(6.0)
여성가장, 결손가정, 한부모가정	13(3.1)	7(4.6)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외국인 등	46(10.8)	19(12.6)
기타(주부, 부모, 장인, 교도소재소자 등)	54(12.7)	27(17.9)
합계	426	151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주 : 중복응답.

4. 희망 지원사항

1) 인건비 지원

- 신청 사업체는 평균 26.7명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였고, 지정 사업체는 평균 20.3명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지정 사업체는 협약체결 시 사업체당 평균 12.9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 신청 사업체의 30.7%는 11-20명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지정 사업체의 39.4%는 협약체결 시 11-20명 사이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 신청 사업체의 23.6%는 10명 이하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지정 사업체의 43.1%가 협약체결 시 10명 이하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 신청 사업체의 45.5%는 20명 이상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지정 사업체의 17.6%가 협약체결 시 20명 이상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표 4-19> 참조).

〈표 4-1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인건비 신청

(단위 : 개(%), %)

인건비 지원 규모	신청 사업체	지정 사업체		지정률
		희망인원	협약체결 인원(1-2차)	
1-5명	66(9.1)	23(9.5)	24(12.8)	34.8
6-10명	105(14.5)	40(16.5)	57(30.3)	38.1
11-20명	222(30.7)	79(32.6)	74(39.4)	35.6
21-30명	119(16.5)	44(18.2)	21(11.2)	37.0
31-50명	118(16.3)	40(16.5)	9(4.8)	33.9
51-100명	87(12.0)	16(6.6)	3(1.6)	18.4
100명 초과	5(0.7)	0(0.0)	0(0.0)	0.0
합계	722(100.0)	242(100.0)	188(100.0)	33.5
평균값(명)	26.7	20.3	12.9	-
최소값(명)	1	1	1	-
최대값(명)	1,380	51	51	-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주 : 지정사업체의 협약체결 시 인원은 1차 104개 기관, 2차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경영컨설팅 희망 분야

- 신청 사업체의 경우 경영컨설팅으로 홍보 마케팅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59.5%로 가장 많으며, 이어 사업전략 경영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체는 31.6%, 회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28.5%,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26.0%이다. 노무와 법무분야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체는 각각 10.9%, 9.5%로 나타났다.
- 지정 사업체의 경우 경영컨설팅으로 홍보 마케팅을 원하는 사업체가 62.4%로 가장 많으며, 이어 사업전략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35.5%, 회계분야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체는 30.2%, 교육훈련 분야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22.3%이다. 노무와 법무 분야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각각 11.6%, 10.7%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표 4-2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 경영컨설팅 희망분야

(단위 : 개(%))

구분	홍보 마케팅	사업전략	회계	교육훈련	노무	법무	기타	사업체수
신청 사업체	431 (59.5)	229 (31.6)	206 (28.5)	188 (26.0)	79 (10.9)	69 (9.5)	25 (3.5)	724
지정 사업체	151 (62.4)	86 (35.5)	73 (30.2)	54 (22.3)	28 (11.6)	26 (10.7)	8 (3.3)	242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주 : 중복응답.

5.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별 현황

- 서울 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서울시, 자치구)을 포함해 401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58개 사업체(14.5%)가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다. 이어 마포구 45개 (11.2%), 영등포구 38개(9.5%), 강남구 32개(8.0%), 중구 24개(6.0%),

서초구 23개(5.7%), 관악구 20개(5.0%) 순으로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미만인 자치구는 동대문구(4개), 금천구(4개), 중랑구(3개)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표 4-21>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별 분포(2010년 8월말 기준)

(단위 : 개(%))

자치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합계
종로구	9(12.0)	16(13.6)	33(16.3)	0(0.0)	58(14.5)
중구	4(5.3)	4(3.4)	16(7.9)	0(0.0)	24(6.0)
용산구	3(4.0)	2(1.7)	6(3.0)	0(0.0)	11(2.7)
성동구	1(1.3)	0(0.0)	5(2.5)	0(0.0)	6(1.5)
광진구	4(5.3)	4(3.4)	5(2.5)	0(0.0)	13(3.2)
동대문구	1(1.3)	3(2.5)	0(0.0)	0(0.0)	4(1.0)
중랑구	1(1.3)	0(0.0)	2(1.0)	0(0.0)	3(0.7)
성북구	0(0.0)	8(6.8)	2(1.0)	4(80.0)	14(3.5)
강북구	4(5.3)	0(0.0)	4(2.0)	0(0.0)	8(2.0)
도봉구	1(1.3)	0(0.0)	5(2.5)	0(0.0)	6(1.5)
노원구	3(4.0)	3(2.5)	3(1.5)	0(0.0)	9(2.2)
은평구	1(1.3)	2(1.7)	2(1.0)	0(0.0)	5(1.2)
서대문구	2(2.7)	3(2.5)	6(3.0)	0(0.0)	11(2.7)
마포구	9(12.0)	17(14.4)	18(8.9)	1(20.0)	45(11.2)
양천구	1(1.3)	1(0.8)	5(2.5)	0(0.0)	7(1.7)
강서구	1(1.3)	4(3.4)	9(4.4)	0(0.0)	14(3.5)
구로구	4(5.3)	1(0.8)	10(4.9)	0(0.0)	15(3.7)
금천구	0(0.0)	0(0.0)	4(2.0)	0(0.0)	4(1.0)
영등포구	9(12.0)	12(10.2)	17(8.4)	0(0.0)	38(9.5)
동작구	1(1.3)	1(0.8)	6(3.0)	0(0.0)	8(2.0)
관악구	5(6.7)	5(4.2)	10(4.9)	0(0.0)	20(5.0)
서초구	4(5.3)	11(9.3)	8(3.9)	0(0.0)	23(5.7)
강남구	3(4.0)	17(14.4)	12(5.9)	0(0.0)	32(8.0)
송파구	1(1.3)	3(2.5)	9(4.4)	0(0.0)	13(3.2)
강동구	3(4.0)	1(0.8)	6(3.0)	0(0.0)	10(2.5)
합계	75(100.0)	118(100.0)	203(100.0)	5(100.0)	401(100.0)

자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부자료.

주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월말 기준 서울 지역에 73개의 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자치구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자치구에서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총 75개로 나타남.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수도 서울시 자료에는 2010년 8월말 기준 195개이지만, 자치구 수집 자료에서는 203개로 나타남. 자치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체수에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로 각각 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이어 관악구에 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중구,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서초구에 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용산구와 노원구, 강남구, 강동구의 4개 자치구에는 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서대문구에는 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의 9개 자치구에는 1개의 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는 성북구와 금천구의 2개 자치구이다.
- 2010년 8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118개이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 이상인 자치구는 마포구(17개), 강남구(17개), 종로구(16개), 영등포구(12개), 서초구(11개)의 5개 자치구이며, 이중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의 3개 자치구는 인증 사회적기업도 각각 9개씩 소재하고 있다. 성북구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8개가 소재하고 있다. 중구, 광진구, 강서구의 3개 자치구에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각각 4개씩 있으며, 동대문구와 노원구, 서대문구, 송파구에는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용산구와 은평구에는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양천구와 구로구, 동작구, 강동구에는 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는 성동구와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의 5개 자치구이다(<표 4-21> 참조).
- 서울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203개이며, 이중 16.3%인 33개 사업체가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구(33개), 마포구(18개), 영등포구(17개), 중구(16개), 강남구(12개), 구로구(10개), 관악구(10개)를 비롯한 7개 자치구이다. 강서구, 송파구에는 각각 9개, 서초구에는 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용산구, 서대문구, 동작구, 강동구에는 각각 6개,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양천구에는 각각 5개, 중랑구와 성북구, 은평구에는 각각 2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 자치구는 성북구(4개)와 마포구(1개)의 2개 자치구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제3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결과

1. 사업체 일반현황

1) 지정 시기

- 1, 2, 3차 공모에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는 총 252개이며, 이 중 7개 사업체가 중도탈락하였다. 245개 사업체 중에서 연락처가 불분명한 10개 사업체를 제외한 23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²⁵⁾. 설문지를 보낸 235개 사업체 중에서 70.6%인 166개 사업체가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었다. 지정 시기별 사업체 설문 응답률을 보면 1차 지정 사업체는 71.7%, 2차 지정 사업체는 69.1%, 3차 지정 사업체는 70.8%이다(<표 4-22> 참조).

<표 4-2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기별 설문조사 응답률

(단위 : 개, %)

구분	설문대상 사업체수	설문응답 사업체수	설문조사 응답률	협약체결 시기
제1차	106	76	71.7	2010년 2월 3일 이후
제2차	81	56	69.1	2010년 5월 6일 이후
제3차	48	34	70.8	2010년 9월 10일 이후
합계	235	166	70.6	-

25)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0개 사업체는 연락처와 주소 자체를 찾을 수 없어 설문대상에서 제외함.

2) 조직형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모법인의 조직형태

—<표 4-23>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와 모법인의 법적 조직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가 58개(35.2%), 상법상 유한회사가 3개(1.8%)로 나타나 상법상 회사가 61개로 37.0%를 차지하고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은 44개(26.7%), 민법상 재단법인은 4개(2.4%)로 나타나 민법상 법인이 48개로 29.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가 24개(14.5%), 기타 법률의 비영리단체가 16개(9.7%),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이 15개(9.1%)이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출발이 되는 모법인의 조직형태를 보면 민법상 사단법인이 49개(29.9%), 민법상 재단법인이 5개(3.0%)로 민법상 법인이 32.9%로 가장 많다. 모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는 49개(29.9%), 상법상 유한회사는 2개(1.2%)로 상법상 회사가 31.1%를 차지한다. 모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는 29개(17.7%), 사회복지법인은 20개(12.2%), 기타 법률의 비영리단체는 9개(5.5%)이며, 생활협동조합이 1개(0.6%)이다

〈표 4-2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모법인 조직형태

(단위 : 개(%))

구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44(26.7)	49(29.9)
민법상 재단법인	4(2.4)	5(3.0)
상법상 주식회사	58(35.2)	49(29.9)
상법상 유한회사	3(1.8)	2(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1(0.6)	0(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24(14.5)	29(17.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15(9.1)	20(1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활협동조합	0(0.0)	1(0.6)
기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16(9.7)	9(5.5)
합계	165(100.0)	164(100.0)

(<표 4-23> 참조).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약 70%는 비영리기관을 모태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모법인 설립연도와 예비사회적기업 준비연도

○모법인의 설립연도

-모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가 44.5%이다. 모법인이 상법상 회사의 경우 2007-2009년에 설립된 사업체가 47.1%, 2010년에 설립된 사업체가 19.6%로 나타나 66.7%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24> 참조).

<표 4-2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법인 설립연도

(단위 : 개(%))

구분	2000년 이전	200-2006년	2007-2009년	2010년	합계
민법상법인·공익법인	14(25.9)	17(31.5)	18(33.3)	5(9.3)	54(100.0)
상법상회사	4(7.8)	13(25.5)	24(47.1)	10(19.6)	51(100.0)
비영리민간단체	9(23.7)	14(36.8)	13(34.2)	2(0.3)	38(100.0)
사회복지법인	14(70.0)	5(25.0)	1(5.0)	0(0.0)	20(100.0)
생협	0(0.0)	1(100.0)	0(0.0)	0(0.0)	1(100.0)
합계	41(25.0)	50(30.5)	56(34.1)	17(10.4)	164(100.0)

○예비사회적기업 준비연도

-사업체의 82.9%가 2009년 이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향하고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인건비 지원정책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93.4%가 200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 참조).

〈표 4-25〉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준비연도

(단위 : 개(%))

구분	2006년 이전	2007-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민법상 법인·공익법인	1(2.0)	4(8.2)	27(55.1)	17(34.7)	49(100.0)
상법상 회사	2(3.3)	11(18.3)	30(50.0)	17(28.3)	60(100.0)
비영리민간단체	4(10.0)	5(12.5)	20(50.0)	11(27.5)	40(100.0)
사회복지법인	1(6.7)	0(0.0)	10(66.7)	4(26.7)	15(100.0)
합계	8(4.9)	20(12.2)	87(53.0)	49(29.9)	164(100.0)

4) 사회적 목적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의 사회적 목적 유형을 보면 일자리 제공형과 혼합형이 각각 43.0%로 가장 많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9.7%, 기타형은 4.2%에 그쳤다.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에는 사회적 목적을 일자리 제공형으로 하겠다는 사업체가 40.0%, 혼합형으로 하겠다는 사업체가 40.6%로 높은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하겠다는 사업체는 8.5%, 기타형으로 하겠다는 사업체는 9.7%, 지역사회공헌형으로 하겠다는 사업체는 1.2%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약간 감소하고,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이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4-26> 참조).

〈표 4-26〉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단위 : 개(%))

구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일자리제공형	71(43.0)	66(40.0)
사회서비스제공형	16(9.7)	14(8.5)
혼합형	71(43.0)	67(40.6)
지역사회공헌형	0(0.0)	2(1.2)
기타형	7(4.2)	16(9.7)
합계	165(100.0)	165(100.0)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80%가 일자리제공형이다. 민법상 법인과 공익법인은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2.2%로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 혼합형이 50.8%를 차지한다(<표 4-27> 참조).

<표 4-27>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단위 : 개(%))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형	혼합형	기타	합계
민법상 법인·공익법인	22(44.9)	6(12.2)	19(38.8)	2(4.1)	49(100.0)
상법상 회사	20(32.8)	6(9.8)	31(50.8)	4(6.6)	61(100.0)
비영리민간단체	17(42.5)	4(10.0)	18(45.0)	1(2.5)	40(100.0)
사회복지법인	12(80.0)	0(0.0)	3(20.0)	0(0.0)	15(100.0)
합계	71(43.0)	16(9.7)	71(43.0)	7(4.2)	165(100.0)

5) 업종

○업종별 현황

–사업체가 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나 생산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업종을 <표 4-28>과 같이 분류하였다. 문화·예술 분야 사업체가 36개(21.8%)로 가장 많으며, 교육서비스 분야 사업체가 32개(19.4%)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외식·식품제조판매 사업체 20개(12.1%), 재활용환경분야 사업체 11개(6.7%), 일반제조업체 11개(6.7%), 친환경제품제조업체 9개(5.5%), 택배·배달서비스업체 9개(5.5%), 간병·생활보조서비스업체 7개(4.2%), 보육서비스업체 6개(3.6%), 집수리 및 조경관리업체 6개(3.6%), 보건의료서비스업체 5개(3.0%), 관광분야업체 3개(1.8%), 청소·차량관리서비스업체 1개(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별 현황

업종별	개(%)
간병·생활보조서비스	7(4.2)
보육서비스	6(3.6)
교육서비스	32(19.4)
보건의료서비스	5(3.0)
문화·예술분야	36(21.8)
관광분야	3(1.8)
재활용 환경 분야	11(6.7)
청소·차량 관리 서비스	1(0.6)
집수리 및 조경 관리	6(3.6)
택배·배달서비스	9(5.5)
외식사업·식품제조판매 분야	20(12.1)
친환경 제품 생산	9(5.5)
일반물품 제조	11(6.7)
기타	9(5.5)
합계	165(100.0)

○업종별 조직형태

—업종별 조직형태를 보면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비중이 각각 38.9%, 40.6%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4-2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업종별 조직형태

(단위 : 개(%))

구분	민법상 법인·공익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합계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6(33.3)	4(22.2)	7(38.9)	1(5.6)	18(100.0)
교육서비스	11(34.4)	8(25.0)	13(40.6)	0(0.0)	32(100.0)
문화·예술·관광 분야	13(33.3)	17(43.6)	8(20.5)	1(2.6)	39(100.0)
재활용 환경 분야	4(36.4)	4(36.4)	2(18.2)	1(9.1)	11(100.0)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4(25.0)	6(37.5)	6(37.5)	0(0.0)	16(100.0)
외식사업·식품판매	2(10.0)	8(40.0)	3(15.0)	7(35.0)	20(100.0)
제조업	6(30.0)	10(50.0)	0(0.0)	4(20.0)	20(100.0)
기타	3(33.3)	4(44.4)	1(11.1)	1(11.1)	9(100.0)
합계	49(29.7)	61(37.0)	40(24.2)	15(9.1)	165(100.0)

-문화·예술·관광 분야와 제조업은 상법상 회사가 각각 43.6%, 50.0%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외식·식품제조판매업은 사회복지법인이 35.0%로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표 4-29> 참조).

2. 사회적기업 인증과 목표

1) 인증 신청 시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의 경우 2011년이 65.7%, 2010년 후반기가 4.8%로 사업체의 70.5%가 지정 1년 전후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에 인증신청을 목표로 하는 사업체는 25.3%로 나타나, 사업체의 95.8%가 지정 2년 전후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표 4-30> 참조).

<표 4-30>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인증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합계
개(%)	8(4.8)	109(65.7)	42(25.3)	3(1.8)	1(0.6)	3(1.8)	166(100.0)

2) 인증의 장애요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요인 1순위로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을 선택한 사업체가 34.3%로 가장 많다. 이어 장애요인 1순위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들은 사업체가 18.7%,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하는 정관, 규약을 갖추는 것’을 꼽은 사업체는 16.3%,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들은 사업체는 10.2%, ‘취약계층 서

비스 제공비율’을 꼽은 사업체는 8.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선택한 사업체는 6.6% 순이다 (<표 4-31> 참조).

<표 4-31> 사회적기업 인증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단위 : 개(%))

구분	1순위	2순위
취약계층 고용비율	31(18.7)	13(7.9)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비율	14(8.4)	23(13.9)
영업활동 수입이 총노무비의 30% 이상	57(34.3)	27(16.4)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정관, 규약을 갖추는 것	27(16.3)	31(18.8)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17(10.2)	35(21.2)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11(6.6)	22(13.3)
기타	8(4.8)	11(6.7)
없음	1(0.6)	3(1.8)
합계	166(100.0)	165(100.0)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인증 시 애로요인을 보면 민법상 법인 및 공익 법인의 38.8%와 비영리민간단체의 55.0%는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을 장애요인 1순위로 선택했다. 상법상 회사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장애요인 1순위로 드는 경우가 27.9%로 나타나 다른 조직에 비해 장애요인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정관과 규약을 갖추는 것’을 장애요인 1순위로 들은 사업체가 40.0%로 여타 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4-32> 참조).

〈표 4-32〉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인증 시 장애요인 1순위

(단위 : 개(%))

구분	민법상 법인/ 공익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합계
취약계층 고용비용	6 (12.2)	17 (27.9)	6 (15.0)	2 (13.3)	31 (18.8)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비용	6 (12.2)	5 (8.2)	2 (5.0)	1 (6.7)	14 (8.5)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19 (38.8)	12 (19.7)	22 (55.0)	3 (20.0)	56 (33.9)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정관, 규약을 갖추는 것	7 (14.3)	8 (13.1)	6 (15.0)	6 (40.0)	27 (16.4)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4 (8.2)	10 (16.4)	1 (2.5)	2 (13.3)	17 (10.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4 (8.2)	7 (11.5)	0 (0.0)	0 (0.0)	11 (6.7)
기타	3 (6.1)	2 (3.3)	2 (5.0)	1 (6.7)	8 (4.8)
없음	0 (0.0)	0 (0.0)	1 (2.5)	0 (0.0)	1 (0.6)
합계	49 (100.0)	61 (100.0)	40 (100.0)	15 (100.0)	165 (100.0)

3) 추구해야 할 목표

- 예비사회적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1순위로 ‘경영실적 및 자립도’를 선택한 사업체가 41.8%로 가장 많다.
- 목표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들은 사업체가 19.4%,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들은 사업체가 13.3%로 나타나, 32.7%의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의 목표를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속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목표 1순위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들은 사업체는 11.5%,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들은 사업체는 7.3%로 나타나, 18.8%의 사업체가 사회 서비스 공급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미션 달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1순위로 선택한 사업체는 각각 3.6%, 2.4%로 나타났다(<표 4-33> 참조).

〈표 4-33〉 예비사회적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단위 : 개(%))

구분	1순위	2순위
경영실적 및 자립도	69(41.8)	40(24.2)
일자리 창출	32(19.4)	25(15.2)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	22(13.3)	43(26.1)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19(11.5)	17(10.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12(7.3)	16(9.7)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4(2.4)	16(9.7)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미션 달성	6(3.6)	11(6.7)
기타	1(0.6)	13(7.9)
합계	165(100.0)	165(100.0)

3. 근로자 현황

1) 근로자 규모

○근로자 유형별 비중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4대보험 미가입),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근로자의 75.7%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이며, 16.8%는 시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는 7.5%로 나타났다(<표 4-34> 참조).

〈표 4-3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유형별 비중

구분	사업체수(개)	평균 근로자수(명)	총 근로자수(명(%))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62	14.7	2,388(75.7)
시간제 근로자	47	11.3	530(16.8)
자원봉사자	24	9.9	237(7.5)
합계	-	-	3,155(100.0)

—사업체당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평균 14.7명이며, 중위값은 9.5명으로 나타나 사업체의 약 50%가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지정 사업체의 경우 설문조사 시점인 9월 서울시와 협약 체결을 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근로자 규모가 평균 5.1명으로 1, 2차 사업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표 4-35〉 참조).

〈표 4-35〉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규모

구분	사업체수(개)	평균값(명)	중위값(명)	최소값(명)	최대값(명)
1차 지정사업체	76	16.3	12	4	114
2차 지정사업체	55	18.0	8	2	441
3차 지정사업체	31	5.1	3	1	31
합계	162	14.7	9.5	1	441

—사업체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29.0%이며,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11.3명이다(〈표 4-36〉 참조).

〈표 4-36〉 4대보험 미가입 시간제 근로자 현황

구분	전체 사업체수(개)	고용사업체수(개(%))	평균값(명)	중위값(명)	최소값(명)	최대값(명)
1차 사업체	76	23(30.3)	16.7	4	1	268
2차 사업체	55	16(29.1)	5.6	2.5	1	29
3차 사업체	31	8(25.8)	7.1	4	1	31
합계	162	47(29.0)	11.3	3	1	268

-사업체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14.8%이며, 사업체 당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9.9명이다(<표 4-37> 참조).

<표 4-37> 자원봉사자 현황

구분	전체 사업체수(개)	자원봉사자 활동 사업체수(개(%))	평균값(명)	중위값(명)	최소값(명)	최대값(명)
1차 사업체	76	9(11.8)	7.4	3	1	30
2차 사업체	55	8(14.5)	12.9	3.5	1	70
3차 사업체	31	7(22.6)	9.6	3	1	40
합계	162	24(14.8)	9.9	3	1	70

○업종별 근로자 비중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28.9%가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43.2명이다.

<표 4-3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별 근로자 비중

(단위 : 명, 명(%))

업종	4대보험가입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평균	인원수	평균	인원수	평균	인원수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14.1	253(10.6)	8.7	52(9.8)	36.0	72(30.4)
교육서비스	13.1	418(17.5)	40.4	283(53.4)	9.0	54(22.8)
문화·예술·관광 분야	8.7	340(14.2)	3.5	38(7.2)	8.5	51(21.5)
재활용 환경 분야	13.9	139(5.8)	6.0	12(2.3)	10.0	10(4.2)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43.2	691(28.9)	11.1	78(14.7)	8.0	16(6.8)
외식사업·식품판매 분야	11.1	210(8.8)	6.8	34(6.4)	3.0	12(5.1)
제조업	9.2	175(7.3)	4.5	27(5.1)	8.0	16(6.8)
기타	18.0	162(6.8)	2.0	6(1.1)	6.0	6(2.5)
합계	14.7	2,388(100.0)	11.3	530(100.0)	9.9	237(100.0)

-교육서비스의 경우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17.5%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13.1명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경우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14.2%가 일하며,

사업체당 평균 8.7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에서는 근로자의 10.6%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14.1명이다.
- 외식사업·식품제조판매업에서는 근로자의 8.8%가 일하며, 사업체당 평균 11.1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 제조업에서는 근로자의 7.3%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9.2명이다.
- 재활용 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5.8%가 일하며, 사업체당 평균 13.9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표 4-38> 참조).
- 시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53.4%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40.4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업으로 시간제근로자의 14.7%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11.1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세 번째로 많은 분야는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9.8%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8.7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표 4-38> 참조).
-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으로 자원봉사자의 30.4%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36.0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분야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자원봉사자의 22.8%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9.0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비중이 세 번째로 큰 분야는 문화·예술·관광 분야로 전체 자원봉사자의 21.5%가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9.0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표 4-38> 참조).

2) 인건비 지원 근로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체당 평균 17.1명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단계에서 신청인원보다 축소된 사업체당 평균 11.6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되었다. 2010년 9월말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체당 평균 10.3명으로 나타나 협약체결의 11.6명에 비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9>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단계에서 인건비 지원 근로자를 가장 많이 신청한 분야는 재활용 환경 분야로 사업체당 평균 22.1명을 신청하였고, 평균 14.5명을 지원받기로 협약체결을 하였다.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업은 사업체당 평균 20.5명을 신청하였고, 평균 17.1명을 지원받기로 협약체결하였다.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은 사업체당 평균 19.2명을 신청하였고, 평균 14.1명을 지원받기로 협약체결하였으나, 조사시점인 9월말 현재 인건비 지원 근로자가 10.6명으로 나타나 협약체결 인원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사업체당 평균 16.3명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였지만, 협약체결 시에는 사업체당 평균 7.9명으로 가장 낮은 인원을 배당받았다(<표 4-39> 참조).

<표 4-39> 업종별 인건비 지원 평균 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신청 평균 근로자수	협약체결 평균 근로자수	현 평균 근로자수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19.2	14.1	10.6
교육서비스	19.0	11.7	11.9
문화·예술·관광 분야	16.3	7.9	8.0
재활용 환경 분야	22.1	14.5	13.8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20.5	17.1	15.3
외식사업·식품제조판매 분야	11.2	11.3	9.3
제조업	14.4	10.3	7.3
기타	16.4	13.0	11.1
합계	17.1	11.6	10.3

3) 취약계층 근로자

○취약계층 유형별 근로자 비중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70.6%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 사업체 비중과 근로자 비중을 보면 사업체의 49.4%가 중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중에서 중고령자 비중이 35.2%로 가장 많다.
- 취약계층 근로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장애인으로 사업체의 31.3%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이다.
- 경력단절여성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12.9%를 차지하며, 사업체의 9.5%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고 있다.
- 취약계층 근로자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1.1%이며, 사업체의 11.1%가 저소득층을 고용하고 있다. 이외 취약계층 근로자 중에서 장기실업자 비중은 6.1%, 새터민 비중은 2.3%, 이주민 비중은 1.1%이다(<표 4-40> 참조).

<표 4-40> 취약계층 유형별 근로자 비중

(단위 : %, 명, 명(%))

구분	고용사업체 비율	평균 고용인원	고용인원 비중
저소득층	30.7	3.7	187(11.1)
중고령자	49.4	7.2	594(35.2)
장애인	31.3	6.9	357(21.2)
성매매피해자	1.2	3.0	6(0.4)
장기실업자	22.9	2.7	103(6.1)
여성가장	12.7	1.7	36(2.1)
경력단절여성	13.9	9.5	218(12.9)
새터민	4.8	4.8	38(2.3)
이주민	4.2	2.7	19(1.1)
기타	17.5	4.4	128(7.6)
없음	7.8	-	-
합계	-	-	1,686(100.0)

주 : 중복응답.

○업종별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 취약계층 근로자의 22.6%는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는 23.4명이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20.1%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11.9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외식사업·식품판매업과 제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은 각각 10.3%이며 사업체당 각각 8.5명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이다. 이 분야의 근로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14.2%인 것에 비해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은 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1> 참조).

<표 4-41> 업종별 취약계층 고용인원

(단위 : 명, 명%)

구분	평균 고용인원	고용인원 합계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9.6	164(9.9)
교육서비스	11.9	332(20.1)
문화·예술·관광 분야	4.5	141(8.5)
재활용 환경 분야	15.3	168(10.2)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23.4	374(22.6)
외식사업·식품제조 분야	8.5	170(10.3)
제조업	8.5	170(10.3)
기타	15.0	135(8.2)
합계	-	1,654(100.0)

4) 고용규모 전망

- 서울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사업체의 근로자(4대보험 가입) 고용규모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전망하면 <표 4-42>와 같다. 사업체의 37.3%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고용인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용인원보다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사업체는 27.7%, 현재보다 고용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사업체도 11.4%로 나타나 사업체의 39.1%가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에 현재보다 고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의 76.4%가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규모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고용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업체는 4.8%, 고용인원이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사업체는 18.7%로 나타나 사업체의 23.5%가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고용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4-42> 참조).

<표 4-42> 인건비 지원 중단 이후 근로자 고용규모 전망

구분	개(%)
현재보다 고용인원 대폭 증가	19(11.4)
현재보다 고용인원 소폭 증가	46(27.7)
현재와 비슷한 고용인원 유지	62(37.3)
현재보다 고용인원 소폭 감소	31(18.7)
현재보다 고용인원 대폭 감소	8(4.8)
합계	166(100.0)

4. 운영현황

1) 출자금

○ 출자 주체별 출자금 규모

– 166개 사업체 중에서 개인 출자금이 있는 사업체는 75개(45.2%), 서울시 출자금이 있는 사업체는 8개(4.8%), 자치구 출자금이 있는 사업체는 3개(1.8%), 기업 출자금이 있는 사업체는 11개(6.6%), 모법인 출자금이 있는 사업체는 30개(18.1%), 기타 출자금이 있는 사업체는 18개(10.8%)이다.

- 출자 주체별 출자액 규모를 보면 서울시와 기업의 평균 출자액은 각각 2억 4,569만원, 2억 2,570만원으로 출자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모법인의 평균 출자액은 7,372만원이고, 개인의 평균 출자액은 5,884만원이며, 자치구 평균 출자액은 4,500만원이다(<표 4-43> 참조).
- 개인의 평균 출자액은 적으나 총 출자금 중에서 개인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3%로 가장 많다. 총출자액에서 기업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 모법인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7%로 그 뒤를 잇고 있다(<표 4-44>참조)

<표 4-43> 출자 주체별 출자금 규모

출자자	사업체수(개(%))	출자금액(천원)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개인	75(45.2)	58,840	100	500,000
서울시	8(4.8)	245,691	5,000	1,000,000
자치구	3(1.8)	45,000	5,000	120,000
기업	11(6.6)	225,700	3,000	2,000,000
모법인	30(18.1)	73,372	619	700,000
기타	18(10.8)	72,987	4,000	775,000

주 : 중복응답.

○ 조직형태별 출자금 규모

- 조직형태별 출자금 규모를 보면 민법상 법인·공익법인의 총출자금이 54억 3,521만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상법상 회사의 총출자금은 47억 2,040만원,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총출자금은 각각 12억 5,380만원, 11억 17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4-44> 참조).

〈표 4-44〉 조직형태별 출자주체의 출자금 비중

(단위 : %, 천원(%))

구분	개인	서울시	자치구	기업	모법인	기타	총출자금
민법상 법인·공익법인	12.8	21.1	0.1	43.7	4.8	17.5	5,435,207(100.0)
상법상 회사	71.0	2.5	0.0	1.7	22.2	2.5	4,720,400(100.0)
비영리민간단체	28.8	9.7	10.4	2.4	33.5	15.3	1,253,800(100.0)
사회복지법인	0.5	52.4	0.0	0.0	42.7	4.4	1,101,731(100.0)
합계	35.3	15.7	1.1	19.8	17.6	10.5	12,511,137(100.0)

—민법상 법인 및 공익법인은 기업이 총출자금의 43.7%를 투자하였으며, 상법상 회사는 개인이 총출자금의 71.0%를 투자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총출자금 중에서 모법인과 개인이 각각 33.5%, 28.8%를 출자하였고, 사회복지법인은 총출자금 중에서 서울시와 모법인이 각각 52.4%, 42.7%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4> 참조).

○업종별 출자금 규모

—업종별 출자금 규모를 보면 교육서비스 분야가 사업체당 평균 2억 1,025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 분야가 사업체당 평균 1억 170만원, 재활용 환경 분야가 사업체당 평균 9,700만원, 외식사업·식품제조판매 분야가 사업체당 평균 7,819만원,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 분야가 사업체당 평균 7,387만원 순이다. 반면 문화·예술·관광과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출자금 규모는 각각 평균 5,424만원, 평균 2,417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출자금 규모가 적다(<표 4-45> 참조).

〈표 4-45〉 업종별 출자금 규모 및 출자주체별 비중

(단위 : 천원, %, 천원(%))

구분	평균	개인	서울시	자치구	기업	모법인	기타	총액
간병·보육· 보건의료서비스	24,165	82.2	0.0	0.0	0.0	1.2	16.6	241,650 (100.0)
교육서비스	210,250	7.9	24.0	0.0	48.1	2.2	17.7	4,625,500 (100.0)
문화·예술·관광 분야	54,235	60.0	0.5	0.5	1.1	25.2	12.6	1,843,982 (100.0)
재활용 환경 분야	97,000	74.9	3.9	0.0	0.0	19.3	1.9	776,000(100.0)
청소, 차량관리, 집수리, 택배, 배달서비스	73,874	75.4	0.0	13.5	0.0	1.2	9.8	886,485 (100.0)
외식사업· 식품제조 분야	78,185	32.6	0.0	0.0	0.0	58.9	8.5	1,094,590 (100.0)
제조업	101,702	49.0	40.1	0.3	4.8	4.3	1.5	1,728,930 (100.0)
기타	187,714	22.1	9.1	0.0	11.7	57.1	0.0	1,314,000 (100.0)

업종별 출자주체 유형을 보면,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은 출자금의 82.2%가 개인 출자금이다. 교육서비스업은 기업 출자금이 48.1%, 서울시 출자금이 24.0%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개인 출자금이 60.0%, 모법인 출자금이 25.2%이다. 재활용 환경 분야는 개인 출자금이 74.9%, 모법인 출자금이 19.3%이다.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업은 출자금의 75.4%가 개인 출자금, 13.5%가 자치구 출자금이다. 외식사업·식품판매업은 모법인의 출자금 비중이 58.9%, 개인 출자금 비중이 32.6%이다. 제조업은 개인 출자금 비중이 49.0%, 서울시 출자금 비중이 40.1%로 나타났다(<표 4-45> 참조).

2) 수입과 지출

(1) 영업수입

○ 매출액

- 지난 3개월(2010년 7월-9월)간 사업체당 매출액 평균 8,085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2,700만원으로 나타나 약 50%의 사업체가 3개월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최소값은 36만원, 최대값은 29억 6,570만원으로 사업체 간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표 4-46> 참조).

- 업종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규모를 보면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 분야의 평균 매출액이 2억 7,827만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제조업 분야의 평균 매출액이 8,903만원, 재활용 환경 분야의 평균 매출액은 8,373만원,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평균 매출액은 5,900만원 순이다.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의 평균 매출액은 4,117만원, 외식사업·식품판매업의 평균 매출액은 3,969만원이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은 3,559만원으로 업종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7> 참조).

○ 매출 총이익

- 지난 3개월간 사업체당 매출총이익(총매출액-매출원가)은 평균 3,051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1,193만원으로 약 50%의 사업체가 1,000만원대 이하 수준의 매출총이익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총이익 최소값은 -4,308만원, 최대값은 3억 9,745만원으로 나타나 매출 총이익의 편차도 큼을 알 수 있다.

- 업종별 사업체당 평균 매출총이익을 보면 재활용 환경이 평균 6,914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 매출총이익이 4,151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교육서비스업 매출총이익이 3,517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다.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 매출총이익은 3,059만원이고,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 분야의 매출총이익은 2,046만원이다. 외식사

업·식품판매업의 매출총이익은 1,883만원이며,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매출총이익이 1,58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7> 참조).

<표 4-46> 영업수입

구분	사업체수(개)	평균(천원)	중위값(천원)	최소값(천원)	최대값(천원)
매출액	127	80,847	27,001	360	2,965,700
매출총이익	94	30,511	11,930	-43,084	397,452
영업이익	95	-6,346	2,122	-208,937	92,000

<표 4-47> 업종별 영업수입

(단위 : 천원)

업종	매출액(평균)	매출총이익(평균)	영업이익(평균)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41,170	30,590	-11,154
교육서비스	35,591	35,167	-11,389
문화·예술·관광 분야	58,995	15,799	-3,778
재활용 환경	83,726	69,143	195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278,268	20,456	8,700
외식사업·식품제조판매 분야	39,694	18,832	-1,487
제조업	89,028	41,513	-26,199
기타	80,866	32,519	6,429

○영업이익

—지난 3개월간 사업체당 영업이익(매출총이익-급여·상여금-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은 평균 -635만원으로 적자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중위값은 212만원이며, 최소값은 -2억 894만원, 최대값은 9,200만원이다(<표 4-46> 참조).

—업종별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업이 87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환경분야 영업이익은 20만원이고, 나머지 업종은 영업이익이 모두 적자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영업이익 적자가 가장 커서 -2,620만원이며, 교육서비스 영업이익은

-1,139만원,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영업이익은 -1,115만원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영업이익은 -378만원이다(<표 4-47> 참조).

(2) 영업외 수입

○ 영업외수입 구조와 항목별 수입비중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외수입 구조와 항목별 수입규모는 다음 <표 4-48>과 같다.

<표 4-48> 영업외수입 구조와 항목별 수입규모

구분	영업외수입 사업체수 (개(%))	사업체당 평균 영업외수입 (천원)	총 영업외수입 (천원(%))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121(72.9)	29,490	3,568,242(67.6)
중앙/서울시/자치구	42(25.3)	25,102	1,054,271(20.0)
모법인 지원금	19(11.4)	9,662	183,587(3.5)
기업 지원금	7(4.2)	15,851	110,960(2.1)
개인 및 기타 후원금	26(15.7)	8,321	216,348(4.1)
이자수입	27(16.3)	273	7,377(0.1)
기타	15(9.0)	9,235	138,528(2.6)
합계	-	-	5,280,714(100.0)

— 영업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으로 총 영업외수입의 67.6%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영업외수입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지원금이다. 즉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 지원금이 영업외수입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 영업외수입에서 개인 및 기타 후원금 비중이 4.1%, 모법인 지원금이 3.5%, 기업지원금이 2.1%로 나타나, 영업외수입에서 민간부문 지원금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영업외수입

— 업종별 영업외수입을 보면 외식사업·식품판매 분야가 사업체당 평균

4,743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업이 사업체당 평균 4,52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사업체당 평균 4,510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다. 이어 교육서비스업은 평균 3,581만원,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은 평균 3,345만원, 재활용 환경 분야는 평균 3,178만원, 제조업 평균은 3,10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4-49> 참조).

—영업외수입에서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비중이 가장 큰 세 가지 업종은 재활용 환경 분야(97.3%),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업(89.7%), 청소·집수리·배달서비스업(84.2%)이다. 영업외수입에서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로 영업외수입에서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비중은 50.8%이나,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지원금 비중이 31.3%, 개인 및 기타 후원금 비중이 8.0%, 기업지원금 비

(표 4-49) 업종별 영업외수입 항목별 비중

(단위 : 개, 천원, %, 천원%)

구분	사업체수	영업외수입 평균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정부	모법인 지원금	기업 지원금	개인 및 기타 후원금	이자 수입	기타	총 영업외수입
간병·보육·보건의료 서비스	16	33,453	89.7	4.2	3.4	0.0	1.5	0.0	1.3	535,253 (100.0)
교육서비스	20	35,809	74.5	17.0	3.0	2.9	2.5	0.1	0.0	716,179 (100.0)
문화·예술·관광 분야	31	45,101	50.8	31.3	0.9	4.1	8.0	0.0	5.0	1,398,142 (100.0)
재활용 환경 분야	9	31,783	97.3	1.7	0.5	0.0	0.0	0.0	0.0	286,051 (100.0)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14	45,198	84.2	8.8	0.6	5.1	0.0	0.9	0.3	632,772 (100.0)
외식사업, 식품제조 분야	14	47,430	65.6	18.2	10.0	0.0	6.1	0.0	0.0	664,015 (100.0)
제조업	16	31,034	63.9	29.1	1.8	0.0	3.0	0.0	2.1	496,537 (100.0)
기타	8	68,971	50.8	26.6	9.3	0.0	4.2	0.1	9.0	551,766 (100.0)
합계	-	-	67.6	20.0	3.5	2.1	4.1	0.1	2.6	5,280,714 (100.0)

중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외식사업·식품제조판매 분야는 영업외수입에서 모범인 지원금 비중이 1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9> 참조).

(3) 지출

○지출구조와 항목별 지출 비중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출 구조와 항목별 지출비중은 다음 <표 4-50>과 같다.
- 총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지출항목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총지출의 59.9%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원가는 총지출의 21.4%,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는 총지출의 16.8%를 차지한다.

○업종별 지출

- 총지출에서 급여와 상여금 지출항목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청소·집수리·배달 서비스(80.8%)와 간병, 보육, 보건 의료서비스(78.4%) 분야이다.
- 총지출에서 매출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40.1%)와 제조업(28.1%), 외식사업·식품제조판매업(26.6%), 교육 서비스업(26.4%)이다.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각각 27.4%, 23.3%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표 4-51> 참조).

<표 4-50> 지출 구조와 항목별 지출비중

구분	사업체수(개)	지출평균액(천원)	총지출(천원(%))
매출원가	70	39,318	2,752,251(21.4)
급여와 상여금	121	63,597	7,695,247(59.9)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98	22,034	2,159,337(16.8)
법인세 비용	13	2,480	32,246(0.3)
기타	28	6,968	195,109(1.5)
합계	-	-	12,848,189(100.0)

〈표 4-51〉 업종별 총지출 규모와 항목별 지출비중

(단위 : 천원, %, 천원(%))

구분	평균액	매출원가	급여와 상여금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 비용	기타	총지출액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54,443	4.9	78.4	13.5	0.6	2.7	871,087 (100.0)
교육서비스	77,364	26.4	46.2	27.4	0.0	0.0	1,547,285 (100.0)
문화·예술·관광 분야	68,566	40.1	43.7	11.8	0.1	3.7	2,125,548 (100.0)
재활용 환경 분야	104,411	20.6	56.1	19.4	0.6	3.4	1,044,111 (100.0)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293,305	3.4	80.8	15.0	0.4	0.4	3,812,962 (100.0)
외식사업, 식품제조 분야	46,358	26.6	62.2	9.9	0.0	1.3	695,365 (100.0)
제조업	115,396	28.1	48.3	23.3	0.2	0.2	1,846,331 (100.0)
기타	100,611	44.6	41.8	10.2	0.2	3.3	905,500 (100.0)
합계	98,832	21.4	59.9	16.8	0.3	1.5	12,848,189 (100.0)

5. 애로사항과 희망 지원사항

1) 애로사항 우선순위와 애로 수준

—사업체가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 1순위로 사업체의 34.3%가 ‘운영자금 부족’을 들고 있다. ‘마케팅 및 판로문제’를 애로사항 1순위로 꼽은 사업체는 22.9%이며, ‘사무실 및 매장, 공장 등 사업장 확보 문제’를 애로사항 1순위로 선택한 사업체가 14.5%이다. ‘근로자 채용 및 이직 등 인력수급 문제’를 애로사항 1순위로 들은 사업체도 10.2%로 나타났다 (<표 4-52> 참조).

〈표 4-52〉 애로사항별 순위 및 애로수준

(단위 : 개(%), 점)

구분	1순위	2순위	애로수준
대표자나 관리자 전문경영 능력부족	6(3.6)	5(3.0)	2.42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4(2.4)	9(5.5)	2.63
사무실, 매장, 공장 등 사업장 확보 문제	24(14.5)	17(10.3)	3.55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미비	8(4.8)	26(15.8)	3.44
업종 전문기술 및 지식, 정보 부족	9(5.4)	11(6.7)	2.80
운영자금 부족	57(34.3)	33(20.0)	4.06
마케팅 및 판로문제	38(22.9)	41(24.8)	4.11
근로자 채용 및 이직 등 인력수급 문제	17(10.2)	21(12.7)	3.35
기타	3(1.8)	2(1.2)	-
합계	166(100.0)	165(100.0)	-

주 : 애로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그렇지 않음' 2점, '그저 그럼' 3점, '약간 그럼' 4점, '매우 그럼' 5점.

—애로수준 점수가 가장 높은 애로사항은 ‘마케팅 및 판로문제’와 ‘운영 자금 부족’으로 각각 4.11점, 4.06점(약간 있음 4점)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매장, 공장 등 사업장 확보 문제’는 3.55점,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미비’는 3.44점, ‘근로자 채용 및 이직 등 인력수급 문제’는 3.35점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표자나 관리자 전문경영 능력 부족’,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업종 전문기술 및 지식, 정보 부족’은 3점(그저 그럼) 미만으로 나타났다(<표 4-52> 참조).

2) 지원사항 만족도

—<표 4-53>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53〉 서울시 지원사업별 수혜 사업체수와 만족도

(단위 : 개(%), 점)

구분	수혜 사업체수	만족도
인건비 지원	149(89.8)	3.62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운영 교육 참여 지원	18(10.8)	3.00
경영컨설팅 지원	132(79.5)	2.86
업종 관련 전문 기술, 노하우 지원	6(3.6)	2.50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53(31.9)	2.81
노무관리 지원	38(22.9)	2.71
사업개발비 지원	33(19.9)	3.15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3(1.8)	2.33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6(3.6)	2.50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1(0.6)	1.00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1(0.6)	1.00
홍보 지원	15(9.0)	2.87
기타	1(0.6)	1.00
무응답	16(9.6)	-

주 : '매우 불만족' 1점, '약간 불만족' 2점, '보통' 3점, '약간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 인건비 이외에 사업체가 서울시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경영컨설팅이다. 사업체의 79.5%가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 점수는 2.86점(보통 3점)으로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친다.
-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31.9%이며, 만족도 점수는 2.81점이다.
-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19.9%이며, 만족도 점수는 3.15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인다.
-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교육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10.8%이며 만족도 점수는 3.0점으로 보통수준이다.
- 홍보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9.0%이며, 만족도 점수는 2.87점으로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친다.

- 업종 관련 전문기술 지원과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각각 3.6%이며, 만족도 점수도 각각 2.5점이다.

3) 필요한 지원사항

○직접 지원사업

- <표 4-54>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우선순위와 필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 지원사항 1순위로 사업체의 47.9%는 ‘인건비 지원’을 들고 있으며, 사업체의 22.4%는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을 꼽고 있다. 1순위로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을 꼽는 사업체는 7.3%,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을 꼽는 사업체는 6.7%이다.
- 지원사항별 필요도 점수에서 4점(약간 필요) 이상을 받은 사항은 5개로 ‘인건비 지원(4.75점)’,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4.60점)’, ‘홍보지원(4.43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4.37점)’,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4.21점)’이다.
- ‘공공구매 지원’은 3.92점, ‘세무 및 회계업무지원’은 3.91점,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은 3.89점, ‘근로자 직업교육’은 3.88점, ‘대표자 및 관리자 전문경영지원’은 3.74점으로 나타나 5개 항목이 필요(4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 정신 및 이해교육 지원’은 3.65점, ‘노무관리 지원’은 3.61점, ‘업종관련 전문기술 지원’은 3.60점으로 나타났다(<표 4-54> 참조).

〈표 4-54〉 직접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필요도

(단위 : 개(%), 점)

구분	1순위	2순위	필요도
인건비 지원	79(47.9)	24(14.5)	4.75
대표자 및 관리자 전문경영지원	4(2.4)	9(5.5)	3.74
사회적기업 정신 및 운영 이해 교육지원	1(0.6)	5(3.0)	3.65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지원	3(1.8)	5(3.0)	3.88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7(4.2)	9(5.5)	3.89
노무관리 지원	0(0.0)	1(0.6)	3.61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2(1.2)	7(4.2)	3.91
업종 관련 전문기술 지원	1(0.6)	1(0.6)	3.60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	37(22.4)	44(26.7)	4.60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12(7.3)	15(9.1)	4.21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5(3.0)	13(7.9)	3.92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11(6.7)	25(15.2)	4.37
홍보 지원	2(1.2)	7(4.2)	4.43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0(0.0)	0(0.0)	3.09
기타	1(0.6)	0(0.0)	-

주 : '매우 필요하지 않음' 1점, '약간 필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약간 필요함' 4점, '매우 필요' 5점.

○ 외부환경 조성 지원사업

—〈표 4-55〉은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외부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업체의 21.1%는 중요한 외부환경 요인 1순위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들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와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으로 사업체의 15.7%가 1순위로 각각 선택하였다. ‘서울시·자치구·고용노동부와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를 1순위로 들은 사업체는 13.9%이며, 사업체의 13.3%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 양성’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1순위로 들은 사업체는 7.2%이다.

〈표 4-55〉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조성사업 중요도

(단위 : 개(%), 점)

구분	1순위	2순위	중요도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 양성	22(13.3)	6(3.6)	4.21
민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26(15.7)	18(10.8)	4.4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	35(21.1)	20(12.0)	4.44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12(7.2)	25(15.1)	4.36
서울시·자치구·고용노동부와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	23(13.9)	37(22.3)	4.44
예비사회적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	3(1.8)	9(5.4)	3.85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 민간지원기관의 전문성	5(3.0)	6(3.6)	4.13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	26(15.7)	21(12.7)	4.25
국내·외 예비사회적기업 정보제공 및 상호교류 전문웹사이트	2(1.2)	5(3.0)	3.87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윤리적 소비 확대	11(6.6)	18(10.8)	4.38

주 :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약간 중요' 4점, '매우 중요' 5점.

—외부환경 조성지원사업 중요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4.44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와 ‘서울시·자치구·고용노동부와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윤리적 소비 확대’가 4.38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및 인식 제고’는 4.36점을 받았다.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은 4.25점,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 양성’은 4.21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 민간지원기관의 전문성’은 4.13점을 받았다. ‘예비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와 ‘국내외 예비사회적기업 정보제공 및 상호교류 전문웹사이트’는 각각 3.85점과 3.87점을 받았으나, 중요하다(4점)에 근접하고 있다.

6. 응답자 사항

○인구 특성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위에서 일하고 있는 116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간관리자급의 성별은 남자가 93명(56.0%), 여자가 73명(44.0%)이다.
- 연령별로는 30대가 40.4%로 가장 많으며, 이어 40대가 30.1%, 50대와 20대는 각각 13.3%, 60대 이상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67.9%, 대학원 이상이 29.1%로 나타나 응답자의 97%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4-56> 참조).

<표 4-56> 응답자 인구특성

구분		명(%)
성별	남	93(56.0)
	여	73(44.0)
	합계	166(100.0)
연령별	20대	22(13.3)
	30대	67(40.4)
	40대	50(30.1)
	50대	22(13.3)
	60대 이상	5(3.0)
	합계	166(100.0)
학력수준별	고등학교	5(3.0)
	전문, 대학교	112(67.9)
	대학원 이상	48(29.1)
	합계	165(100.0)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 동기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 동기 1순위로 응답자의 40.0%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 추구’를 들고 있다. 응답자의 25.5%는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관련 부문에서 일해 왔기 때문’을 1순위로 들고 있다. ‘사

회·환경 등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23.6%이다. 응답자의 23.2%는 동기 2순위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일이므로’를 들고 있다.

〈표 4-57〉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 동기

(단위 : 개(%))

구분	1순위	2순위
사회·환경 등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	39(23.6)	42(25.6)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 추구	66(40.0)	51(31.1)
직업이 필요해서	3(1.8)	8(4.9)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관련 부문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42(25.5)	16(9.8)
나, 가족, 이웃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5.5)	9(5.5)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일이므로	6(3.6)	38(23.2)
합계	165(100.0)	164(100.0)

○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전망

—응답자의 98.1%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향후 10년 서울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표 4-58> 참조).

〈표 4-58〉 서울시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 전망

구분	명(%)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121(73.3)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41(24.8)
별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	3(1.8)
합계	165(100.0)

—2010년 지정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현 사업체의 40-59% 정도가 지속적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50.9%로 가장 많다. 현 사업체의 80% 이

상이 지속적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3.6%에 불과하다. 현 사업체의 40% 미만 수준에서 지속적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29.7%로 나타났다(<표 4-59> 참조).

<표 4-5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전망

구분	개(%)
80% 이상이 지속적 발전	6(3.6)
60-79% 정도 지속적 발전	26(15.8)
40-59% 정도 지속적 발전	84(50.9)
20-39% 정도 지속적 발전	22(13.3)
20% 미만으로 지속적 발전	27(16.4)
합계	165(100.0)

○ 교육 및 연수 참여

— 응답자의 49.7%는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자는 53.3%, 여자는 45.2%가 참여한 적이 있어 남성의 교육 참여율이 약간 높다.

<표 4-60> 성별·연령별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참여 유무

(단위 : 명(%))

구분	교육 참여 유무		합계	
	있음	없음		
성별	남	49(53.3)	43(46.7)	92(100.0)
	여	33(45.2)	40(54.8)	73(100.0)
	합계	82(49.7)	83(50.3)	165(100.0)
연령대	20대	9(40.9)	13(59.1)	22(100.0)
	30대	27(40.3)	40(59.7)	67(100.0)
	40대	30(60.0)	20(40.0)	50(100.0)
	50대	13(59.1)	9(40.9)	22(100.0)
	60대 이상	3(75.0)	1(25.0)	4(100.0)
	합계	82(49.7)	83(50.3)	165(100.0)

— 연령별 교육참여율을 보면 60대 이상은 75.0%, 40대는 60.0%, 50대는 59.1%, 30대와 20대는 각각 40.3%와 40.9%이다(<표 4-60>참조).

제5장 정책 제안



1.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주

1) 고용노동부, 서울시, 자치구 인증 및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포괄

-서울시의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공모사업을 통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정에 초점이 주어졌다. 현재 서울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체(예비사회적기업),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있다. 2010년 들어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건비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서울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인증 및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서울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85개가 있으며, 2010년 13차 인증 이후에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 사업체가 늘어날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지속가능성과 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강화된 지정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뿐이다.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포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즉 정책 대상 사업체에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것이다.

2)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공동체사업 포괄

-행정안전부는 2010년 6월 11일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없으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의 하나인 지역사회공헌형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기조는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고 있어,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사회를 고려한 전략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민 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육성정책 및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개념과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은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을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 기초자치단체, 1개 이상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지역단위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해당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자활공동체사업이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받는 경우가 있다. 전국의 사회적기업 319개(2010년 7월 기준) 중에서 자활공동체로 시작한 사업체가 18.2%이며, 서울은 이보다 낮은 9.6%이다. 실직빈곤층을 위한 고용창출과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에서 출발한 자활공동체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전형적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은 부처 업무에 따라 강조하는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유사성도 많은 사업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별 통합된 지원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들 사업들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 범주에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공동체사업을 포괄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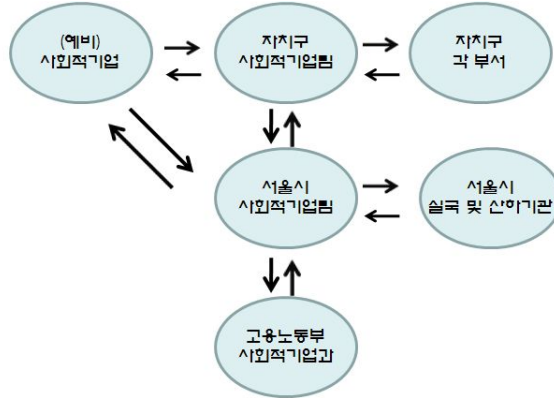
2. 행정지원 및 관리체계

1) (예비)사회적기업의 행정 접촉창구 단일화

-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후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기업 담당 주무부서인 사회적기업팀이 만들어졌다.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는 그 속성상 여러 행정부서와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행정위계상으로는 중앙과 서울, 자치구 차원에 걸쳐 지원업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문화, 환경, 복지, 교육, 고용 등 부서별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사회적기업 지원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행정 접촉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단일화된 접촉창구가 없으면 사회적기업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 의뢰하더라도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외부환경요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고용노동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으며, 중요도 점수도 4.44 점(매우 중요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지침 및 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2010년 들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 자치구로 급하게 넘어가고 있다. 서울 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지원 사업을 부서별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지원 지침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국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부서마다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동일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업무상 필요한 행정문이나 의사전달을 위해 여러 부서와 접촉하지만, 신뢰할 수 있거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서울시는 2010년 현재 실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업무를 2011년부터 자치구로 이양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2010년 12월까지 사회적기업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차 행정접촉 창구는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고, 서울시의 행정접촉 창구는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팀은 사회적기업 지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5-1〉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지원 체계

2)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 지원 및 관리의 역할분담

-서울은 국제도시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으며, 빅이슈코리아²⁶⁾처럼 국제협력 네트워크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전국과 해외를 사업 활동 영역으로 삼는 사업체가 15.4%(<표 4-12> 참조)이다. 한편 보육, 간병, 보건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전형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그 속성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근로자는 직주 근접성을 높여 시간과 교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는 이용자의 경우 신뢰에 기반한 더 나은 서비

26) 노숙자 자립을 목적으로 1991년 영국의 존 버드(John Bird)가 빅이슈(Big Issue) 잡지를 창간함. 노숙자들이 잡지 판매상이 되고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이 노숙자인 판매사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임. 영국에서 빅이슈가 성공하면서 국제협력모델사업으로 확산되어 영국, 호주, 일본 등의 9개국 13개 도시에서 자국판 빅이슈 발매와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빅이슈코리아는 2010년 7월 잡지를 창간하였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음.

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자치구별로 (예비)사회적기업 분포에 큰 격차가 있다.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30개 이상 입지한 자치구는 종로구(58개), 마포구(45개), 영등포구(38개), 강남구(32개)의 4개 자치구이다. 반면 동대문구(4개), 중랑구(3개), 은평구(5개), 금천구(4개) 등의 4개 자치구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외 성동구(6개), 강북구(8개), 도봉구(6개), 노원구(9개), 양천구(7개), 동작구(8개), 강동구(10개) 등의 7개 자치구에는 6-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용산구(11개), 광진구(13개), 성북구(14개), 서대문구(11개), 강서구(14개), 구로구(15개), 송파구(13개) 등의 8개 자치구에는 11-15개의 사업체가 있다. 중구(24개), 관악구(20개), 서초구(23개) 등의 3개 자치구에는 20-24개의 사업체가 입지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치구별 분포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국제 및 전국, 수도권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일반기업처럼 장소 중심성이 높은 종로나 중구, 강남구, 마포구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치구는 향후 지역고용 창출, 지역주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크며, 이런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비)사회적기업 활동영역을 글로벌형, 전국형, 커뮤니티형으로 분류하여 서울시는 글로벌형과 전국형을, 자치구는 커뮤니티형을 지원관리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을 모색한다.

3) 거점 지원기관 설정과 지원네트워크 구축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업무 중에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 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지원, 마케팅, 교육훈련, 홍보 등의 지원사업은 민간 지원기관을 통해 하게 된다. 고용노

동부의 경우 권역별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사회적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및 관리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설립 중이다.

-서울시도 민선 5기의 2014년까지 1,80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0년 8월말 현재 서울지역에 401개의 인증,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지원·관리할 것인가를 기획해야 할 단계에 있다.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최장 2년이며, 2년차에는 분기별로 인건비 지원을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자체 경영역량과 경쟁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영지원, 마케팅, 교육훈련 등의 간접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법인의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에서부터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매우 다양하다. 기업으로서 이익을 창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도 실현해야 하는데,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또한 다양하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로 그 유형이 다양하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70%가 취약계층이며, 취약계층의 유형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자, 이주민, 새터민, 장기실업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종도 주류 경영컨설팅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인 보육, 간병, 보건,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재활용·환경분야, 청소·차량관리서비스, 택배·배달서비스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경영컨설팅 지원기관이 부족한 여건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적합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은 다각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로 거점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거점 지원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로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서울시는 업종분야별, 근로자 유형(장애인 직업재활, 청년 등), 자활공동체형 등으로 유형별 거점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이들 지원기관들이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거점 지원기관은 공모방식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

4)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협의회 활동지원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사회적기업연합’이 구성되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만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단일연합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소통채널을 단일화할 수 있어 업무 수월성을 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두 협의체가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고, 통합협의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제공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런던사회적기업협의회(Social Enterprise London)의 경우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3. 교육·훈련 지원사업

1)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훈련사업 확대

-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은 2010년부터 새로운 업무이자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전교육훈련이 미흡하여 공무원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자치구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이 업무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조사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 수준에서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문화, 환경, 복지, 보육, 직업훈련, 고용, 주거, 자원봉사 등 서울시 부서의 대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산하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을 기획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은 우선 (예비)사회적기업 교육훈련 커리큘럼 기획과 교재 개발사업을 위탁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총론 수준의 교재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업종, 근로자 유형 등) 교재를 개발하도록 한다. 교육훈련은 개발된 커리큘럼과 교재에 기반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 또는 민간지원기관에서 하도록 위탁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대상 교육사업

- 현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기조가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

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원래 사회적기업은 사업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공감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사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체의 사회적 목적에 공감한 구성원들이 근로자로 일하면서 설립된 예비사회적기업도 있으나, 고용중개센터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아 운영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많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조사에서 애로요인 1순위로 ‘근로자 채용 및 이직 등 인력수급 문제’를 들은 사업체가 10.4%이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70%가 취약계층이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체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인접 사업체별, 또는 업종별로 묶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조사에서 대표자 및 관리자 전문경영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수준이 3.74점(필요 4점)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조사에 의하면 관리자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25.5%가 시민사회 부문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보면 비영리조직이 67.3%이며, 모법인의 조직형태도 71.8%가 비영리조직이다. 이는 관리자가 이익 창출에 필요한 전문경영 분야에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와 관리자가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사업은 대학이나 민간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 연계와 교육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14.5%이며,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7.5%로 나타났다. 향후 자원봉사자 지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와 지원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원봉사처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 자원봉사자와 (예비)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기획을 수립한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지원방식의 다양화

- 서울시는 현재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와 지정사업만을 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 대신 작업장 제공,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전제로 하는 공모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 서울시 소셜벤처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자체를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소셜벤처경연대회는 청년부문,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5. 업종별 지원사업 차별화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52%가 간병, 보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업체 비중은 12%이다. 서울시는 2011

년 공동 판매시설을 1개 설치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의 사업체 지원은 관행적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문화예술분야로 36개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20개인데, 생산품 판로 지원 방식이 공공구매가 효율적인지, 공동판매시설 제공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체가 공동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조업 공동판매시설 지원과 문화예술 공동작업장 지원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지원방식이다. 문화예술분야는 타 업종에 비해 지속적인 창의성을 요구하고 이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분야이다. 문화예술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간병, 보육,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평균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상대적으로 적다. 청소, 집수리, 택배 등의 개인서비스 제공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일대일 대면서비스를 하는 사회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업종이므로 사업체의 매출액 증대는 한계에 부딪힌다. 매출액도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비 지출 비중이 큰 사회서비스 사업체는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여타 사업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서울시 사회적기업 웹사이트 활성화

- 서울시가 현재 개발 중인 서울시 사회적기업 웹사이트가 충실하게 구성되어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예비)사회적기업 관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지원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첫째, 사회적기업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사업체 정보 구축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합정보 구축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 둘째, 웹사이트가 (예비)사회적기업과 행정이 소통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면 부서 간 물리적 장벽을 일정 부분 극복하면서 행정창구 단일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셋째, 웹사이트는 (예비)사회적기업, 공무원, 지원기관, 시민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
- 넷째, 다양한 주체들이 웹사이트를 온라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다섯째, (예비)사회적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업무도 늘어나고 업무 비중도 커지게 되는데, 웹사이트를 통해 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2010, 「2010 사회적기업 제주학술대회 자료집」.
- 김혜원, 2010,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 「2010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국제심포지엄」.
- 노동부·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해외 사회적기업 법제도 현황」,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시리즈 6.
- 박금자·나경수·박연진 역, 2008, 「달라지는 세계: 사회적기업가들과 새로운 상상의 힘」, 지식공작소(David Bornstein, 2004, *How to Change the World: Social Entrepreneurs and the Power of New Ideas*, Mildred Marmur Associates Ltd.).
- 서울시립대학교·SH공사, 2010,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제24회 대도시행정세미나 자료집」.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유병선, 2008, 「보노보 혁명」, 부키.
- 이수경 역, 2008, 「사회를 바꾸려는 젊은 사회적기업가의 꿈」, 에이지 21(Hiroki Komazaki, 2007, *Shakaio Kaeruo Shigotoni Suru*, EIJI Press Inc.).
- 이용재·임준홍, 2009,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이정환 역, 2008, 「미래사회를 여는 변화의 물결」, 에이지 21(Nana Watanabe, 2007, *Shakai Kigyoka to iu Shicoto Chagemakers*, Nikkei Business Publications, Inc.).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 조영복·곽선화·류정란, 2009,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 사회적기업 연구원.

- 최종태 · 이광택 · 장홍근 · 이원재 · 이철영 · 변은지, 2007, 「사회적기업, 새로운 세계: 미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실업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한상진 · 서종균 · 황미영 · 엄형식, 2005, 「사회적기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한상진 · 황미영, 2009, 「지역사회복지와 자원부문: 한국과 영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집문당.
- Cabinet Office, 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 Defourny, Jacques, 2007, 사회적기업: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심포지엄자료집」.
-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elis.go.kr> (자치법규시스템)

부 부



ID			
----	--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애로점,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여,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며,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담당자 : 선임연구위원 신경희 (2149-1255, skhee@sdi.re.kr)

연 구 원 정순주 (2149-1368, prayeris@sdi.re.kr)

연 구 원 김상준 (2149-1313, okloveyou@sdi.re.kr)

☞ 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반사항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사업체는 몇 차에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
 ① 1차 ② 2차 ③ 3차
2. 귀 예비사회적기업을 출범시킨 모법인의 법적 형태는 무엇이며, 모법인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는 무엇이며,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부터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각각 해당 사항을 선택해 주시고 연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2-1) 모법인의 법적 형태 () 2-2) 설립연도 (년)	2-3) <u>현</u> 예비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 () 2-4) 준비연도 (년)
<p><보기></p> <p>① 「민법」상 사단법인 ② 「민법」상 재단법인 ③ 「상법」상 주식회사 ④ 「상법」상 유한회사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⑦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⑧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활협동조합 ⑨ 기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p>	

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약체결 시 귀사업체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귀 사업체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목적으로 인증받을 계획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각각 해당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3-1)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약체결 시 사회적 목적 유형 ()	3-2)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사회적 목적 유형 ()
<p><보기></p> <p>① 일자리제공형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③ 혼합형 ④ 지역사회공헌형 ⑤ 기타형</p>	

4. 귀 예비사회적기업이 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또는 생산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

- ① 간병·생활보조서비스
- ② 보육서비스
- ③ 교육서비스
- ④ 보건의료서비스
- ⑤ 문화·예술 분야
- ⑥ 운동 분야
- ⑦ 관광 분야
- ⑧ 재활용 환경 분야
- ⑨ 청소·차량관리서비스
- ⑩ 집수리 및 조경관리
- ⑪ 택배·배달서비스
- ⑫ 외식사업, 식품제조 분야
- ⑬ 친환경 제품 생산
- ⑭ 일반물품 제조
- ⑮ 기타 (_____)

5. 현재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이전에 다음과 같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해주시시오.

지원 사항	필요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기업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아카데미 개설	①	②	③	④	⑤
(2)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관련 시장분석 및 경영전략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세무와 회계에 대한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9. 2010년 현재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약 250여개입니다. 이중 2년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지속적 발전을 하게 될 사업체수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

- ① 80% 이상이 지속적 발전 ② 60-79% 정도 지속적 발전
- ③ 40-59% 정도 지속적 발전 ④ 20-39% 정도 지속적 발전
- ⑤ 20% 미만으로 지속적 발전

☞ 귀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 사업체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응모시 인건비 지원 근로자를 몇 명 신청하였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인건비 지원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9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 임금비 지원을 받은 고용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1) 사업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시 신청한 임금비 지원 근로자 수 (전문인력 포함)	__ 명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서울시와 협약체결한 임금비 지원 근로자수 (전문인력 포함)	__ 명
(3) (9월말 기준) 서울시 임금비 지원 근로자 수 (전문인력 포함)	__ 명

11. (2010년 9월말 기준) 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다음 유형별로 각각 몇 명입니까?

(1) 4대보험 가입 근로자	__ 명
(2)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파트타임, 임시직 등)	__ 명
(3) 자원봉사자	__ 명

12. 귀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 근로자 고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로자 유형별로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1) 4대보험 가입 근로자 ()	① 현 인원보다 대폭 고용증가 ② 현 인원보다 소폭 고용증가 ③ 현 인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고용유지 ④ 현 인원에서 소폭 고용축소 ⑤ 현 인원에서 대폭 고용축소
(2)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① 현 인원보다 대폭 고용증가 ② 현 인원보다 소폭 고용증가 ③ 현 인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고용유지 ④ 현 인원에서 소폭 고용축소 ⑤ 현 인원에서 대폭 고용축소

13. 귀 예비사회적기업의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한 취약계층은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 유형별로 적어주십시오.

취약계층 근로자 유형	인원 수
(1)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___ 명
(2) 중고령자	___ 명
(3) 장애인	___ 명
(4) 성매매피해자	___ 명
(5) 장기실업자	___ 명
(6) 여성가장	___ 명
(7) 경력단절여성	___ 명
(8) 새터민	___ 명
(9) 이주민	___ 명
(10) 기타	___ 명
합계	___ 명

귀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귀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 출자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출자금액은 얼마이며, 출자자는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출자자	출자금액 (단위 : 원)	비고
(1) 개인	_____ 원	※ 출자자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2) 서울시	_____ 원	-
(3) 자치구	_____ 원	
(4) 기업	_____ 원	-
(5) 모법인	_____ 원	-
(6) 기타	_____ 원	-
총액	_____ 원	-

15. 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난 3개월(7월, 8월, 9월)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제3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와의 협약체결일 이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항목별	
수입	영업 수입	① 매출액 : _____ 원
		② 매출 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 _____ 원
		③ 영업이익(매출 총이익-급여-상여금-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 _____ 원
	영업 외 수입	④ 서울시 인건비지원금 : _____ 원
⑤ 중앙/서울시/자치구 지원금(사업개발비등) : _____ 원		
⑥ 모법인 지원금 : _____ 원		
⑦ 기업지원금 : _____ 원		
⑧ 개인 및 기타 후원금 : _____ 원		
⑨ 이자수입 : _____ 원		
⑩ 기타 : _____ 원		
합계 : _____ 원		
지출	① 매출원가 : _____ 원	
	② 급여와 상여금 : _____ 원	
	③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 _____ 원	
	④ 법인세 비용 : _____ 원	
	⑤ 기타 : _____ 원	
합계 : _____ 원		

17.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이후 귀 사업체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고,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지원 사항	지원 받음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 통	만 족	매우 만족
(1) 인건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운영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경영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업종 관련 전문기술, 노하우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노무관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사업개발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①	②	③	④	⑤
(9)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①	②	③	④	⑤
(10)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①	②	③	④	⑤
(12) 홍보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 기타		①	②	③	④	⑤

1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 외부환경 요인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외부환경요인을 순위별로 3가지만 기재하여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환경요인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 통	약 간 중 요	매 우 중 요
(1)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 양성	①	②	③	④	⑤
(2) 민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①	②	③	④	⑤
(3)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5) 서울시·자치구·고용노동부와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	①	②	③	④	⑤
(6) (예비)사회적 기업간의 협력네트워크	①	②	③	④	⑤
(7)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 민간지원기관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8)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	①	②	③	④	⑤
(9) 국내·외 (예비)사회적기업 정보제공 및 상호교류 전문웹사이트	①	②	③	④	⑤
(10)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윤리적 소비 확대	①	②	③	④	⑤
(11) 그외 필요한 환경요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설문지를 작성해주신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4. 귀하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사회·환경 등의 문제 해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②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③ 단순히 직업이 필요해서
④ 시민사회/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문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⑤ 나·가족·이웃이 처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⑥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일이므로
⑦ 기타 (_____)

5. 귀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향후 10년 서울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 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②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③ 별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

6. 귀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 ② 없음

7.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면서 귀하가 받는 월평균 근로소득(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세금공제 이전)은 약 얼마입니까? (_____원)

8. 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자치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및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현황과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사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010년 9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담당자 : 선임연구위원 신경희 (2149-1255, skhee@sdi.re.kr)

연 구 원 정순주 (2149-1368, prayeris@sdi.re.kr)

연 구 원 김상준 (2149-1313, okloveyou@sdi.re.kr)

(※ 작성자의 자치구, 소속부서, 직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치구명	_____ 구	부서명	___ 국 ___ 과 ___ 팀	직급	___
------	---------	-----	-------------------	----	-----

1. (2010년 8월 31일 기준) 귀 자치구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부서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예	→	전담부서명	___ 국 ___ 과 ___ 팀	설립시기	___ 년 ___ 월
② 예정	→	전담부서명	___ 국 ___ 과 ___ 팀	설립예정시기	___ 년 ___ 월
③ 아니오					

2. (2010년 8월 31일 기준) 귀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행 상황에 각각 체크(√)하여 주십시오.

항목	진행 상황	연도
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제정 ② 제정 예정 또는 진행 중 ③ 미정	조례제정시기 : ____ 년 ____ 월
2)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	① 수립 ② 수립 예정 또는 진행 중 ③ 미수립	계획수립시기 : ____ 년 ____ 월

3. 귀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도	예산 배정	총예산	세부 항목별 예산
2009년	① 있었음 ② 없었음	총 _____ 원	(※ 항목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인건비(천만원), 사업개발비(천만원), 경영컨설팅비(천만원) 등)
2010년 (8월말 기준)	① 있음 ② 없음 ③ 추경 중에 있음	책정된 예산 : _____ 원 추경 예산 : _____ 원 총계 : _____ 원	(※ 항목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인건비(천만원), 사업개발비(천만원), 경영컨설팅비(천만원) 등)

4. (2010년 8월 31일 기준) 귀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수는 몇 개입니까?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수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수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수
_____ 개	_____ 개	_____ 개	_____ 개

5. 귀 자치구의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공약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6. (2010년 8월 31일 기준) 귀 자치구는 (예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까? ()
- ① 예 (☞ 6-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 7번으로 가세요)

6-1) (예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시]

(부)구청장	의회의원	자치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합계
1명	2명	기획재정국장(소속) 1명 주민생활지원과장(소속) 1명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소속)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언론사 1명 학계·연구기관 2명 기업 1명	총 10명

(부)구청장	의회의원	자치구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합계
___ 명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___ (소속) ___ 명	총 ___ 명

7. (2010년 8월 31일 기준) 귀 자치구는 관내 (예비)사회적기업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② 예정 ③ 아니오
8. (2010년 8월 31일 기준) 귀 자치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예정 ③ 아니오

9. (2010년 8월 31일 기준) 귀 자치구에서 시행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한 사업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지원내용	지원 여부		비고
	① 있음	② 없음	
1) 재정지원	① 있음	② 없음	-
2) 경영지원	① 있음	② 없음	-
3) 시설비 지원	① 있음	② 없음	-
4) 작업 및 사무 공간 임대	① 있음	② 없음	-
4) 우선구매의 촉진	① 있음	② 없음	-
5) 조세 감면	① 있음	② 없음	-
6) 홍보	① 있음	② 없음	-
7) 기타	① 있음	② 없음	(※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0. 마포구는 공모를 통해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용산구는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연계하여 시설비 및 공유지 임대를 지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귀 자치구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또는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는 향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황 및 계획	유무	지원내용
1) 현 상황 (2010년 8월말 기준)	① 있음 ②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업종, 설립/지원 시기, 지원방식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향후 계획	① 있음 ②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업종, 설립/지원 시기, 지원방식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책임자(팀장급 이상) 의견 조사입니다.

(※ 작성자의 소속부서 및 직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부서명	_____ 국 _____ 과 _____ 팀	직 급	_____
-----	-------------------------	-----	-------

1. 귀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예 : 세미나, 포럼, 사회적기업아카데미, 국내·외 사회적기업 탐방 등)

- ① 예 ② 아니오

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로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각각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필요 정도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사회적기업 예산 확충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기업 전담인력 보강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사회적기업 관련 세미나/ 포럼/ 아카데미 참여, 국내·외 사회적기업 탐방 등을 통한 정보습득)	①	②	③	④	⑤	
4)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정보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예: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기업 업무실무자 간 네트워킹 구축	(1) 고용노동부/서울시 자치구 간 네트워킹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자치구 간 네트워킹 구축	①	②	③	④	⑤
	(3) 자치구와 관내 (예비)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①	②	③	④	⑤

3.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애로점 또는 보완/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문 요약 (Abstract)



Suggestion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Seoul

Kyung-Hee Shin · Soon-Joo Jung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Seoul and to propose suggestion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Seoul. As of end of August, 2010, in Seoul, there are 73 social enterprises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18 candidates of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3 candidates of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ity of Seoul, and 5 candidates of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upervision of Gu, totalling 399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s carried out for this research,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of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upervision of Seoul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industry distribution, 23.6% work in culture/ art/ travel related services, taking up the largest number. Others include education(19.4%), manufacturing(12.2%), food sales(12.1%), nursing/ child care/ public health(10.8%), recycling(6.7%), delivery services(5.5%), and home maintenance and gardening(3.6%). Second, 70% of workers in these enterprises belong to disadvantaged groups; 35.2% are the aged, 21.2% are handicapped, 12.9% are women with career disruption, 11.1% are from the lowest class in terms of earnings, 6.1% are the long-term unemployed, and 2.3% are emigrants from North Korea. Third, the average business profit for three months(from July to September of 2010) is -6,350,000(Won). By industry, those in manufacturing has the lowest business profits of -26,000,000 (Won), those in education and nursing/ child care/ public health have -11,000,000(Won), those in culture/ art/ travel related services have -4,000,000

(Won), and those in food sales have -1,500,000(Won). Enterprises that had positive business gains are those in delivery services(8,700,000 Won) and home maintenance and gardening(2,000,000 Won).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Seoul. First, a present focus on manufacturing in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different support strategies are to be applied to enterprises working in different industries. Among candidates of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upervision of Seoul, those in manufacturing make up only 12%, and those in culture/ art/ education/ caring and other social services make up 54%. These enterprises in caring and social services have difficulties in making business profits, and they have comparatively high labor costs. Strategie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need to take these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Second, in supporting and administering social enterprise, a proper division of labor between Seoul and each Gu needs to be devised. As for enterprises working at the national or the global level, such as those in fair trade or fair travel, Seoul needs to be the primary supporter. On the other hand, enterprises which provide services for the local community, such as the caring and other social services, each Gu needs to take the role of primary supporter. Third, in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Seoul presently focuses on supporting labor costs. In order to raise the sustainability of these enterprises, support needs to be provided for other aspects as well, such as providing workplace, supporting development of business areas, consulting for management, and training.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Definition and Support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1. 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s
2. Types of Support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s

Chapter 3 Administration Structure and Support Program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1.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 Autonomous City-Districts

Chapter 4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Seoul

1.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Curr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Candidated by Seoul City Government
3. the Result of Surveys on Social Enterprises Candidated by Seoul City Government

Chapter 5 Suggestion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Seoul

References

Appendice

시정연 2010-PR-28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발 행 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발 행 일 2010년 11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773-1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